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의 대외 철강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WTO 가입 이후 중심으로—



201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유 려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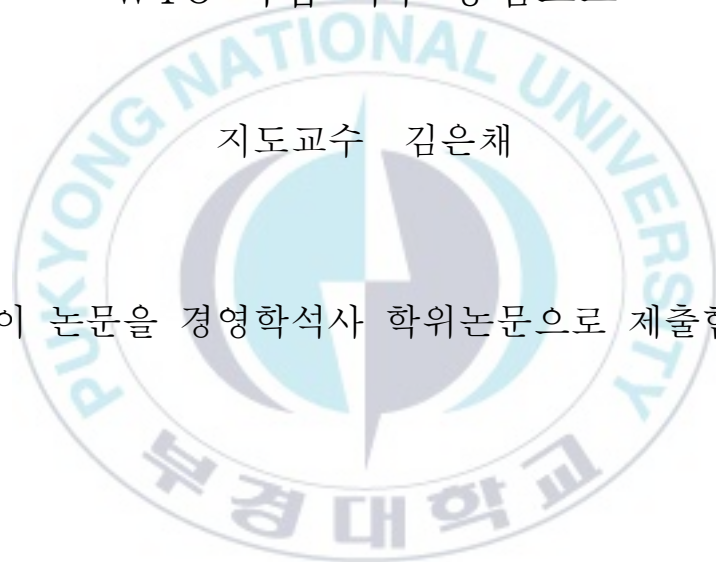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의 대외 철강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WTO 가입 이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은채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유 려 민

유려민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22일



위원장 경영학박사 최 순 권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인)

위 원 경제학박사 김 은 채 (인)

목 차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요약	v
ABSTRACT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중국 관련 WTO 분쟁현황 분석	7
제1절 기존연구 검토	7
제2절 중국 관련 WTO 분쟁사례현황 분석	9
1. 중국 관련 WTO 분쟁 연도별 및 시기별 현황	9
2. 중국 관련 WTO 분쟁 품목별 현황	13
3. 중국철강분쟁이 차지하는 비중	16
제3장 중국 철강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18
제1절 중국의 철강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18
1. 중국 - 미국 DS252사건(2002년)	18

2. 중국 - EU DS397사건 (2009년)	23
3. 중국 - 미국 DS414사건 (2010년)	33
4. 중국 - 일본 DS454사건 (2012년)	42
5. 중국 - 유럽 DS460사건 (2013년)	42
6. 중국 - 미국 DS544사건 (2018년)	51
7. 중국 - 미국 DS407사건 (2010년)	56
8. 중국 - 미국 DS422사건 (2011년)	57
9. 중국 - 미국 DS437사건 (2012년)	59
제2절 중국 철강분쟁사례의 전체적인 비교분석	61
제3절 철강분쟁은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	64
1. 전체 영향	64
2. 중 - 미 간 영향	66
제4장 중국 철강제품 반덤핑의 원인 및 정책 건의	73
제1절 중국 철강제품 반덤핑의 원인	73
1. 전 세계 차원	73
2. 국가 차원	74
3. 철강 차원	75
제2절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정책 개선	75
제3절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정 방안	78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2

표 목차

<표1> 중국의 WTO 분쟁 연도별 현황	11
<표2> 중국 WTO 분쟁 시기별 현황	12
<표3>중국 관련 WTO 분쟁사건에 품목별 현황	14
<표4>중국 철강분쟁사건 현황	17
<표5> DS252사건 요약 표	19
<표6> DS397사건 요약 표	23
<표7> DS414사건 요약 표	33
<표8> DS454, DS460사건 요약 표	42
<표9> DS544사건 요약 표	52
<표10> DS407사건 요약 표	57
<표11> DS422사건 요약 표	58
<표12> DS437사건 요약 표	59
<표13> 중국 제소된 철강분쟁사례 비교분석표	62
<표14> 중국 피소된 철강분쟁사례 비교분석표	63

그림 목차

<그림 1>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은 수출금액이 전 세계에 총금액을 차지하는 비율	3
<그림 2> 중국 WTO 분쟁 연도별 현황	13
<그림 3> 미국은 중국 철강제품을 수출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조치	67
<그림 4> 미국은 중국 완제품 강 수입량 및 점유율	68
<그림 5> 중국은 미국 완제품 강 수입량 및 점유율	69
<그림 6> 2017년 미국 완제품 철강 수출한 주요국가 및 지역	71

Research on China's Foreign Steel Dispute Cases
-Centered on China's accession to the WTO

LIU LIM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eel is essentially the lifeline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ts every move has been the focus of the government and the steel industry association. Since China joined the WTO in 2001, with the sustained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rapid expansion of foreign trade, trade frictions with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become increasingly fierce, and China's foreign trade has begun to enter a period of high friction. China has been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most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world for many years and is one of the biggest victims of global trade disputes. Among them, China's steel products are the hardest hit by trade remedy investigations, and are the core products of China's trade friction.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ases has generally shown an upward trend. From 1991 to the end of 2016, foreign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steel involved 24 countries and regions, involving more than 10 billion yuan, which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and provoked much debate.

This article will cover the iron and steel disputes after China's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major steel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top three trading partner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 analyzing causes, their respective background, general processes and trial results of various disputes, we can identify some issue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steel dispute cases, put forward practical solutions, as well as observe China's foreign anti-dumping strategi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무역 기구 (아래 WTO로 약칭) 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창설된다. 오늘날 세계에서 각국, 각 지역 무역 관계와 무역 정책을 조절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범위가 가장 넓은 국제 경제 조직이다. 그것의 전신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비해 세계 무역 기구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조직성이 강하고 고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축 및 발전하는 것이다.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WTO에 의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핵심 요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WTO의 가장 독특한 기여로 간주되는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 협상 역사상 가장 큰 성과이고 WTO협의를 실시 및 집행하는 가장 강력한 법률 보장 수단이다.¹⁾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 이후 지금까지 18년이 경과되었다. 중국은 18년 기간 동안 대외개방을 하여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성장하였으며, 소위 G2 체제를 구축하였다.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은 2003년 5098억 달러에서 2017년 4,3879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1의 수출국과 세계 제2의 수입국이 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발전단계가 들어서게 되었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결과, 대외적으로 중국은 책임과 동시에,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²⁾

1) 郭倩. (2016). The Anti-dumping Duties Case Analysis of Japan and EU. China Concerning HP-SSST 日本歐盟訴中國无縫鋼管反傾銷稅案研究, 2-36.

중국은 WTO의 규칙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무역 관련 투자 수단에 대한 농업, 수입 허가, 무역 지적 재산권, 무역 및 기술 장벽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기존 WTO의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수입 관세, 농산물 관세 및 산업 관세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제도 개혁, 투명성 개선, 통보 및 자문, 법 집행 및 사법 심의 등 무역장벽의 감소를 통해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투자를 원활하게 하였다.

지난 세기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수출의 최대 국이었다. 1973년에 독일 수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6%에 달해 미국의 비중과 비슷했고 1990년에는 이르러 12.2%로 미국을 증가하였다. 일본의 수출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9.9%로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 <그림1>으로부터 80년대 이후 중국 수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 나아감에 따라 지난 40년간 고속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1년, 중국이 WTO 가입이후 수출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중국 수출액이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13.8%로 증가하였고 그 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 세계무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미국 수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 독일은 8.2%, 일본은 불과 3.9%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12.8%였다.

2)중국관세청商務數據中心智研諮詢網站提供
<http://www.chyxx.com/industry/201802/613892.html>

<그림 1>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은 수출금액이 전 세계에 총금액을 차지하는 비율



데이터출처 : WIND, 중국 중태증권연구소 양창 제공

그러나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의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타국에 의한 무역 제재는 점점 더욱 늘어나고 있다. 국제 무역은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면 동시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반덤핑 및 보조금은 매우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두 가지 문제가 왜 심각한가에 대해 연구와 토론이 거듭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한 이래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하고 대외무역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와의 무역 마찰이 날로 격렬해져 중국 대외 무역은 무역 마찰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미 수년째 세계에서 반덤핑 조

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고 전 세계 무역 분쟁 중 최대 피해국 중의 하나로 되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한 후 현재까지 수출액 총액이 2660억 달러에서 2조6000억 달러로 늘었다³⁾.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의 무역 규모가 급증하면서 무역 마찰과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은 27개국(지역)으로부터 무역 구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반덤핑은 91건, 상관관세는 19건, 세이프가드는 9건 이었다. 관련금액은 143.3억 달러였으며, 사건 건수 및 관련금액은 각각 36.8%와 76%로 증가하였다. 2017년 중국은 21개국(지역)으로부터 75건의 무역 구제 조사를 받았다. 그 중 반덤핑은 55건, 상관관세는 13건, 세이프가드조치는 7건이나 되었다. 관련금액은 110억 달러이며, 2016년에 보다 사건건수 및 관련금액은 각각 37%와 23% 감소하였다. 비록 감소하긴 하였지만, 중국은 23년 만에 반덤핑 조사 최다 국가란 오명을 달게 되었다. 철강업은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민생과 관련된 기초 업종이다. 그러나 중국의 철강 제품은 무역 구제 조사를 당하는 핵심품목이어서 더 많은 관심과 반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12년, 중국 철강 제품이 반덤핑 사건 조사를 받은 것이 중국이 그 해에 받은 반덤핑 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33%에 달하던 것에서 2016년에는 그 비중이 31.91%에 달해 8.58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또한 최근 몇 년간 사건 수량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해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치는 24개국과 지역에 관련되고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백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적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⁴⁾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외 철강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마찰 실제문제, 원인 및 주요특징을 도출을 할 것이다. 우선, 중국 관련의 WTO 분쟁현

3) 세계은행 데이터

<https://data.worldbank.org.cn/indicator/NY.GDP.MKTP.CD?locations=CN&view=chart>

4) 陳玉科. (2018). 中國鋼鐵制品遭受反傾銷現狀及對策. 合作經濟與科技, (1), 31-33.

황을 분석하여 WTO홈페이지에 제출한 중국의 철강분쟁에 각 사례분쟁의 기인, 과정, 결과 및 관세청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고 철강분쟁은 중국의 철강제품을 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심층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철강제품관련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및 건의를 제시할 것이다. 정책 건의는 정부 차원 및 기업차원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발생한 일련의 철강 분쟁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큰 단락의 경위와 재판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철강 분쟁 사례를 분석해 중국의 대외 반덤핑 실태문제 및 응용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철강 분쟁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해 국외의 대 중국 철강 분쟁의 형성 원인과 중국의 철강분쟁에 대한 특징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은 철강분쟁 실태문제와 대외 반덤핑 전략에 대해서도 일부 건의를 제기하고 기업들이 제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차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향후 중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과 개선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 철강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 이 글은 철강 케이스의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외국 대 중국의 철강분쟁 현황과 특징을 분석할 것이고 중국 철강의 갖

은 반덤핑에 대한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국외 반덤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를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하는 것이다. 무역 분쟁의 경우 사건의 실체와 내용을 분석해야 하고 중국에 국한된 자료만으로는 실증분석 기법을 적용할 정도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WTO에서 및 중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WTO 분쟁관련 통계, 데이터, 분쟁사례,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 등 무역 분쟁 관련 자료 및 기존 문서를 이용한 문헌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 철강제품이 빈번하게 반덤핑을 당하는 원인을 도출하여 중국의 철강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 및 정책 건의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무역의 건전한 발전 및 무역마찰 감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장 중국 관련 WTO 분쟁현황 분석

제1절 기존연구 검토

중국의 대외 철강분쟁사례에 관한 기존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 및 협정이나 세계 WTO 분쟁사례현황이나 중국 철강분쟁사건 중심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 및 협정에 관한 연구로는 분쟁절차를 분석한 최승환(1994)를 비롯하여 최근 국제통상법의 이해에서의 국제통상의 분쟁해결의 발전, 특성 및 절차에 대해 분석한 박민규, 왕광영(2007), 유예리(2008), 조영정(2009), 권영민(2015),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해 분석한 최문영(2015), 이병우(2005), 楊國華(2018), 반덤핑협정에 대하여 분석한 김도형(2007), 나수엽(2010), 이제홍(2010), 吳禹 (2011), 김상만(2014), 여택동, 전정기, 장동식(2014)등의 연구가 있다. 劉軍 (2011)는 중국 반덤핑제도의 조사 및 조치 관련 규범을 소개하고 중국 반덤핑제도와 WTO 반덤핑협정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顏婷婷 (2015), 孔志强(2013)은 반덤핑에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陳明聰 (2003), 전의천, 김석민(2005), 何秀榮 (2005), 차영자(2006), 彭德雷 (2015), 胡建國 (2015)는 EU의 비시장경제체제 반덤핑체도의 역사, 현황, 미래에 대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한편, 세계 WTO 분쟁사례현황에 관련한 분쟁을 정리하여 분석한 연구로 나희량(2016), 김윤화(2017)는 세계 WTO 분쟁현황, 전정기(2015)는 중국 관련 WTO 분쟁사례 현황에 관련한 분쟁의 연구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철강분쟁사건에 대한 중심 사례연구는 특정 분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김상만(2013), 李曉郭, 栗瑤(2013)는 DS414 사건의 사건개요 및 WTO의 판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고 있으며, 상소기구의 주요쟁점 및 진행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彭雅慧(2009)는 DS414사건의 반덤핑 및 반 보조금협정중의손해확정이 체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姜艷麗(2005), 전정기(2015)는 중-미간 DS252 철강분쟁 사건의 개요를 대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郭倩(2016), 劉藝(2016), 徐昕, 張磊(2016)은 중-일,EU 의 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튜브 ("HP-SSST") DS454,DS460사건의 발생한 배경, 기인 및 과정, 그리고 일본과 EU는 소송을 제기할 때 주요 소송청구 및 근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더욱 깊이가 있는 연구이고 공수진(2017)은 이 분쟁사건의 배경, 경과 및 패널과 상소기구의 주요 평결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조현숙(2011), 俞燕宁(2012), 孔志强(2016)은 중-EU간 DS397 철강분쟁사건의 사건 개요,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패널과 상소기구판정의 의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유연닝(2012)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 비 시장경제체제지위"문제의 폐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문걸, 왕레이(2011)는 중-EU간 DS397 철강분쟁사건의 문제적 입장, 패널 및 상소기구의 추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白玫(2013)은 DS437 철강분쟁사건을 정리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孟歡(2018)은 미국 "377조사"를 때문에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 및 발생한 원인이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管濤(2018), 楊國華, 譚觀福(2018)은 중-미간 DS544 철강분쟁사건의 발생한 기인, 존재한 문제 및 무역 보호주의기지도온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모두 특정 사건 및 특정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국 관련의 WTO 철강분쟁과 미치는 영향 및 정책 건의에 관한 포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전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중국 관련 WTO 분쟁 연도별, 시기별 및 품목별 현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하여 살펴본다. 또한 중국과 주요 철강분쟁 국가 미국, EU, 일본과 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까지 간 중국의 WTO 분쟁분석 및 주요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별국가의 분석은 중국과 앞으로 중국 철강제품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쟁이 발생한 원인, 해결방법 및 정책건의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2절 중국 관련 WTO 분쟁사례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의 분쟁현황을 분석함에 2001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현재까지의 WTO분쟁을 연도별, 시기별, 품목별 및 중국 철강분쟁을 차지하는 비중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하여 살펴본다.

1. 중국 관련 WTO 분쟁 연도별 및 시기별 현황

연도별로 2018년 8월 말까지 중국의 WTO 연도별로 정리해보면<표1>와 같다. 중국이 참여한 WTO 분쟁 사건은 크게 중국이 타 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제소한사건, 피소한 사건, 그리고 중국이 해당 분쟁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이유로 제3자 참여한 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WTO 가입 이후 현재(2018년 8월)까지 중국은 총 207건의 분쟁에 참여하였으며, 제소한 분쟁의 수는 20건, 피소된 분쟁의 수는 42건, 제3자로 참여한 사건이 145건으로 중국 직접관련 분쟁은 총 62건, 연 평균 3.6건 이다. 중국 분쟁 마찬가지로

WTO 가입 직후 중순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 총 10건의 가장 많은 분쟁 건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분쟁건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 2018년 8월말까지 이미 8건 분쟁 건수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제소와 피소에서 직접 분쟁이지만 제3자 참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WTO 분쟁 참여에서의 특징은 제소와 피소에 비하여 제3자 참여의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참여 분포를 나타낸<표1>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처음 4년 동안 중국은 제소한 분쟁건수는 1건, 피소한 분쟁건수는 1건, 제3자 참여한 분쟁건수는 50건을 하게 된다. 이 기간은 중국이 WTO 가입이후 WTO 분쟁해결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와 연구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7년 동안 총 직접 분쟁건수는 38건이고 특히 피소건수는 29건으로 이 기간 연평균 5.4건에 달한 반면 제3자 참여는 46건으로 많은 감소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중국이 많은 피소를 생기면서 피소한 사건에 집중하게 되어 제3자 참여한 분쟁이 줄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제소분쟁사건은 2009년 이후 무척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 까지 6년간 분쟁건수는 총 22건으로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이후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⁵⁾.

중국의 WTO 분쟁건수를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한<표2>를 보면, 맨 먼저 10년 주기로 살펴보면, 2001년-2010년까지의 중국 WTO 분쟁의 수는 총 27건, 연 평균 2.7건으로 전체 연 평균 3.6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2018년까지는 총 35건, 이 기간에 연 평균 4.4건으로 전체 연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년 주기로 살펴보면, 2001년-2005년까

5) 김윤화, & 나희량. (2017). 인도네시아 WTO 무역분쟁 연구: 통상정책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3), 29-55.

지의 분쟁의 수는 총 2건, 연평균 0.4건으로 이 시기에 제일 평온한 시기로 보이거나 2006-2010년까지는 총 25건, 연 평균 5건으로 이 동안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다. 이후 2011 - 2015년까지는 20건, 연 평균 4건으로 전체 연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6-2018년8월까지의 분쟁건수는 총 18건, 연 평균 4.5건으로 다시 평균건수를 상회하고 있다⁶⁾.

<그림2>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WTO 분쟁은 초기에 사건이 거의 없는데 2006년대 이후 2012년대까지에 집중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대 까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이 6건, 2018년 8월까지 8건 등으로 점차 다시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또한 200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상황의 악화와 각국의 무역 감소 및 신보호무역주의 추세 등의 영향을 받아 국가 간 무역마찰이 증가한 것임을 보여준다(전정기 2015).⁷⁾

<표1> 중국의 WTO 분쟁 연도별 현황

연도	제소	피소	분쟁건수	제3자참여	계
2002	1		1	19	20
2003				17	17
2004		1	1	9	10
2005				5	5
2006		3	3	9	12
2007	1	4	5	2	7
2008		5	5	7	13
2009	3	4	7	6	13
2010	1	4	5	7	12
2011	1	2	3	4	7
2012	3	7	10	11	23

6) 나희량. (2016).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6(4), 119-177.

7) 전정기. (2015).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무역학회지*, 40(4), 263-286.

2013	2	1	3	12	14
2014		1	1	12	13
2015	1	2	3	8	11
2016	2	4	6	7	13
2017		1	1	7	8
2018	5	3	8	3	11
합계	20	42	62	145	207
연평균			3.6건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_y_e.htm 저자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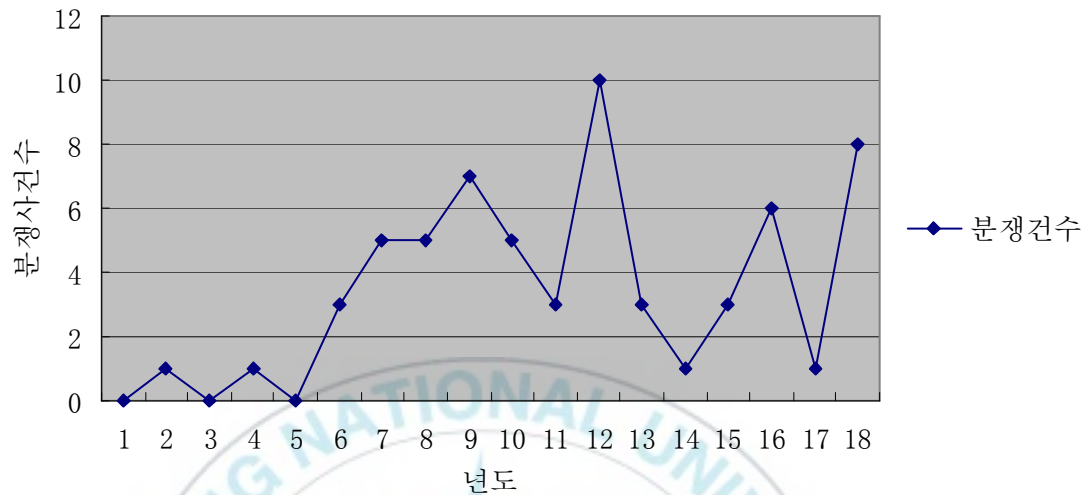
<표2> 중국 WTO 분쟁 시기별 현황

연도 (10년 주기)	분쟁 건수	연 평균 건수	연도 (5년 주기)	분쟁 건수	연 평균 건수
2001-2010	27	2.7	2001-2005	2	0.4
			2006-2010	25	5
2011-2018	35	4.4	2011-2015	20	4
			2015-2018	18	4.5
총 건수	62	3.6	총 건수	62	3.6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_y_e.htm 저자 정리.

<그림 2> 중국 WTO 분쟁 연도별 현황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2. 중국 관련 WTO 분쟁 품목별 현황

관련품목별로 2001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현재 2018년 8월말까지 중국의 품목별로 정리해보며, 중국과 관련된 총 62건의 분쟁사건 중에 관련품목은 27개 종류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품목분야별로 보면 중국의 가금류 1건, 농산물 3건, 희토류 3건, 원재료 5건, 자동차 및 부품 5건, 철강류 9건, 에너지 4건 등으로 주요 가공제조업과 관련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철강류에 대한 9건으로 분쟁 수는 제일 많고 전체 분쟁사건의 14.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가 보면 중국

분쟁사례 중에 대부분 피소분쟁인데 그 피소분쟁이 42건으로 전체 분쟁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류 분쟁의 수는 9건인데 6개는 다 제소 분쟁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다음에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3>중국 관련 WTO 분쟁사건에 품목별 현황

관련품목	사건번호	연도	상대국	분쟁종류	분쟁개수
가금류	DS392	2009	미국	제소	1
농산물	DS489	2015	미국	피소	3
	DS511	2016	미국	피소	
	DS517	2016	미국	피소	
희토류	DS431	2012	미국	피소	3
	DS432	2012	EU	피소	
	DS433	2012	일본	피소	
항공기	DS501	2015	미국	피소	1
1차 알루미늄	DS519	2017	미국	피소	1
간행물	DS363	2007	미국	피소	1
원재료	DS394	2009	미국	피소	5
	DS395	2009	EU	피소	
	DS398	2009	멕시코	피소	
	DS508	2016	미국	피소	
	DS509	2016	EU	피소	
의류	DS451	2012	멕시코	피소	2
	DS489	2015	미국	피소	
자동차 및 부품	DS339	2006	EU	피소	5
	DS340	2006	미국	피소	
	DS342	2006	캐나다	피소	
	DS440	2012	미국	피소	
	DS450	2012	미국	피소	
상계, 반덤핑 및 보조금	DS379	2008	미국	제소	5
	DS387	2008	미국	피소	
	DS388	2008	멕시코	피소	
	DS390	2009	Guatemala	피소	
	DS449	2012	미국	제소	
하드웨어 산업	DS489	2015	미국	피소	1
육계 제품	DS427	2011	미국	피소	1

철강	DS252	2002	미국	제소	9
	DS414	2010	미국	피소	
	DS437	2012	미국	제소	
	DS544	2018	미국	제소	
	DS454	2012	일본	피소	
	DS460	2013	EU	제소	
	DS422	2011	미국	제소	
	DS397	2009	EU	제소	
	DS407	2010	EU	피소	
셀룰로오스 펄프	DS483	2014	캐나다	피소	1
특정 품	DS543	2018	미국	제소	2
	DS558	2018	미국	피소	
TAX	DS358	2007	미국	피소	2
	DS359	2007	멕시코	피소	
의료 제품	DS489	2015	미국	피소	1
방법론	DS515	2016	미국	제소	2
	DS516	2016	EU	제소	
기술 이전	DS549	2018	EU	피소	1
타이어	DS399	2009	미국	제소	1
종이	DS368	2007	미국	제소	1
에너지	DS419	2010	미국	피소	4
	DS437	2012	미국	제소	
	DS449	2012	미국	제소	
	DS452	2012	이탈리아	제소	
X선 보안 검사장비	DS425	2011	EU	피소	1
지적 재산권	DS362	2007	미국	피소	2
	DS542	2018	미국	피소	
시청각 제품	DS363	2007	미국	피소	1
금융, 재정	DS372	2008	EU	피소	4
	DS373	2008	미국	피소	
	DS378	2008	캐나다	피소	
	DS413	2010	미국	피소	
집적 회로	DS309	2004	미국	피소	1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3. 중국철강분쟁이 차지하는 비중

1995년부터 중국은 항상 반덤핑 조사를 받아 왔다.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사건 수량은 5286건이고 그 가운데서 중국이 받은 반덤핑 조사는 총 1217건으로 전 세계 수량의 23%차지한다고 나타났는데 이 비중은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높다. 이런 반덤핑 조사는 40여 가지 상품과 관련된다. 그 가운데서 철강 제품이 가장 심각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철강제품은 중국 대외 무역 마찰의 핵심품목이다. 중국 철강 산업은 시작이 늦었고 중국 철강 산업의 초기단계에 서양에서는 이미 과잉생산 해소 조치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중국 철강 발전이 빠른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현재 달성한 정도로부터 보았을 때 중국 철강 산업의 발전은 무(無)에서 유(有)로, 유(有)에서 강(強)으로의 궤기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철강 산업이 번영 발전함에 따라 그에 뒤따라 나타난 바로 대량의 반덤핑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은 중국 철강 산업으로 하여금 지워지지 않는 손실을 입게 하였고 중국 경제 발전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하였다. 2016년은 2015년에 이어 역사상 철강 분쟁이 가장 많이 있으며, 그러한 조치로 인해 시련의 한 해였다. 아시아부터 유럽연합, 북아메리카,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2016년에 중국 철강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분쟁은 세계 18개국과 지역에 관련되었고 거의 모든 철강 품종이 포함되었으며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조치 및 반 우회덤핑(Anti-circumvention)등 조치가 포함된다. 현재 데이터로부터 보았을 때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개시한 국가로 열간 압연, 중후판(中厚板), 나사무늬강, 선재부터 각종 강관, 냉간 압연, 아연도금강관까지 거의 모든 철강 제품 품종이 제한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은 현재 무역 방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 철강 제품 수출의 중요 지역인 동남아시아의 보호도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강철 제품의 수입을 가로막기 위해 빈번히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흥 시장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 및 남아프리카도 중국에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고 있어 중국 철강 제품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무역 마찰의 급증은 중국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수출량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수십만 명이 이로 인해 실업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WTO 가입 이후 과거의 주요 철강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철강 제품이 빈번히 반덤핑 조사를 받는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표4>를 보면 우선, 중국 철강분쟁의 주요 상대국은 미국, 일본, EU만 있고 사건 수는 미국 5건, EU 3건, 일본 1건이다. 분쟁사건 중에 총 9건의 분쟁에 참여하였으며, 제소한 사건이 5건, 피소당한 사건이 4건이다. 분쟁결과는 승소건수 5건, 패소건수 3건, 1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다음 장으로 중국 WTO에 철강분쟁 사례에 대한 사건 기인, 주요쟁점 및 판결내용을 살펴보고 각 분쟁에서 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WTO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였는지 보고 이와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4>중국 철강분쟁사건 현황

관련품목	사건번호	연도	상대국	분쟁종류	결과
철강	철강 제품	DS252	미국	제소	승소
		DS414	미국	피소	패소
		DS437	미국	제소	승소
		DS544	미국	제소	진행중
	스 테 인 레 스 스틸	DS454	일본	피소	패소
		DS460	EU	피소	패소
	다 이 아 몬 드 톱날	DS422	미국	제소	승소
	철강 패스너	DS397	EU	제소	승소
		DS407	EU	피소	승소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주: 2018년 8월말 기준

제3장 중국 철강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철강제품을 수출에 대한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중국의 WTO 철강분쟁현황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철강분쟁 사건을 구분하여 사건 원인, 소송과정 및 주요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중국 철강 분쟁 증가가 때문에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중국의 철강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본 절에서는 먼저 대표적인 철강분쟁사례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비슷하게 관련한 철강분쟁사례가 간략하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중국 - 미국 DS252사건(2002년)

-특정 철강 제품의 수입에 대한 확실한 세이프가드 조치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표5> DS252사건 요약 표

사건제목		특정 철강 제품의 수입에 대한 확실한 세이프가드 조치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원고		중국
피고		미국
제3국		브라질; 캐나다; 대만 쿠바; 유럽 공동체;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태국; 터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참고 조항 (협약 요청서에 인용)		1994 년 GATT : Art. I : 1 , II , X : 3 , XIII , XIX : 1 , XIX : 2 Safeguards : Art. 2 , 2.1 , 2.2 , 3 , 3.1 , 3.2 , 4 , 4.1 , 4.2 , 5 , 5.1 , 5.2 , 7 , 7.1 , 8 , 8.1 , 9 , 9.1 , 12
경과	접수 시기	2002 년 3 월 26 일
	패널 보고서 배포	2003 년 7 월 11 일
	상고인 본문 보고서 배포	2003 년 11 월 10 일
현재 결과		중국 승소
사례 분석 과정		사건 및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인
		사건 WTO분쟁해결기구의 소송 과정
		패널 및 상소기구의 정점 및 주요판결
시사점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 정부는 반덤핑, 반보조금 및 특별 보호 조치를 끊임 없이 적용해 타국 철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이 사건은 중미 양국의 무역 마찰 해결이 법률화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음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1) 사건 및 세이프가드 조치의 원인

2001년 6월 미국 무역위원회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2002년 3월 미국은 10개 철강 제품에 대하여 8%~30%의 관세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EC, 한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⁸⁾

세이프가드 조치는 첫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하여, 둘째, 수입이 급증하고, 셋째, 이러한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며, 넷째, 수입 급증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동할 수 있다. 패널은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수입의 급증, 수입급증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의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패널의 해석에 대하여 항소하였지만 상소기구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세이프가드 조치별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패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⁹⁾

이 사건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최초로 제소한 사건이지만 중국이 단독으로 제소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8개국이 함께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의 증가 사실이 없거나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철강제품에 대하여 발동된 것으로 국제 철강제품 교역을 크게 교란시켰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제소국들은 거의 모든 쟁점에서 승소하였고, 미국은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

8) 이병우. (2005).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국제경제법연구*, 3, 7-31.

9) 이상용. (2007).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 (1)(2). *통상법률*, (74), 9-14.

되기 이전에 동 조치를 철회하였다.

(2) 이 사건 WTO분쟁해결기구의 소송 과정

2002 년 3 월 26 일 중국 (WT / DS252)은 특정 철강 제품의 수입에 대해 미국이 부과 한 최종 안전 조치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했으며 제 2.1 조, 제 2.2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4.1 조, 1994 년 GATT의 안전 조치 및 조약 I : 1, II, X : 3, XIX : 1 및 XIX : 2의 4.2, 5.1, 5.2, 7.1, 8.1, 9.1 및 12. 협의. 2002 년 4 월 5 일 뉴질랜드는 또한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DSB에 일본과 뉴질랜드의 협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통보하였다. 2002 년 6 월 24 일 중국은 미국 조치가 GATT 1994의 안전 조치 및 조항 I : 1, II 및 XIX 협정의 제 2.1, 3.1, 4.1, 4.2, 5.1, 5.2, 8.1, 9.1 및 12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스위스는 미국 조치는 안전 조치 협정 제 2.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5.1 조 및 8.1 조의 GATT 1994 조에 위반되었다. 노르웨이는 미국의 조치가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7 조 및 제 9.1 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안전 조치 및 조약에 관한 협정 I : 1, X : 3 (a) 및 GATT 1994의 XIX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3) 패널 및 상소기구 및 항소기구의 주요판결¹⁰⁾

DSB는 DSU 제 9.1 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단일 패널을 설립하여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제 3 자의 권리를 유보한 회원국도 단일 패널에서 제 3 자로 간주되었다. 캐나다, 대만, 쿠바,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터키 및 베네수엘라는 제 3 자로서 패널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한다.

10)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WT/DS252/ 참조

2002 년 7 월 15 일 DSB는 미국과 유럽 공동체, 일본, 한국,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및 뉴질랜드 간의 절차 상 합의에 대해 통보 받았다. 2002년 7 월 18 일 DSB는 미국과 브라질 간의 절차 상 합의에 대해 통보 받았다. 2002 년 7 월 15 일 유럽 공동체, 일본, 한국,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및 뉴질랜드 는 사무국장에게 패널 구성을 결정하도록 요청하여 2002 년 7 월 25 일 패널 이 구성되었다.

2003 년 11 월 10 일, 항소기구 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되었다. 항소기구는 이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10 가지 보호 조치가 1994 년 GATT 제 19 조 (a) 및 안전 조치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궁극적 인 결론을 지지 하였다 . 항소기구는 미국이 "증가 된 수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과 10 가지 보호 조치 중 2 가지에 대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의 존재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패널의 결론을 뒤집었다 .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조차도 다른 이유로 WTO 협정 과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2003 년 12 월 10 일의 회의에서 DSB는 항 소기구 보고서와 수정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4) 시사점

철강 보호 무역에서 미국은 중국과 분쟁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무역국과의 분쟁도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철강은 미국의 주요 산업으로서 오랫동안 중점적인 보호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반덤핑, 반보조금 및 특별 보호 조치를 끊임없이 적용해 타국 철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제적 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WTO 분쟁 해결 메커니 즘에 미국 철강 보호에 대한 소송을 이미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2002년의 미국 철강 보호 조치 사례는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참여한 첫 분쟁 사건이다. 중국은 제소 측으로 사건의 전체 과정에 처음으로 참여하였고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고 및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대미 철강 제품 수출이 직면한 불리한 국면 및 중국 철강 수출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하는 태도와 차별 정책에 직면하여 중국은 여전히 WTO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 중 중국에 속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다. 2002년의 미국 철강 제품 보호조치 사례 (DS252) 는 중국 WTO 가입 이후 최초로 WTO 관련 조항을 이용해 분쟁 해결 기관에 제소한 사례인 동시에 중·미가 분쟁 해결 기관에 제출한 최초의 무역마찰 사건으로 중·미 양국의 무역 마찰 해결이 법률화 궤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2. 중국-EU DS397사건¹¹⁾ (2009년)

-중국의 특정 철 또는 철강 파스너에 대한 확실한 반덤핑 조치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표6> DS397사건 요약 표

사건제목	중국의 특정 철 또는 철강 파스너에 대한 확실한 반덤핑 조치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원고	중국
피고	유럽 공동체
제3국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인도; 일본; 노르웨이; 대만 태국; 터키; 미국
참고 조항	덤핑 방지 (1994 년도 GATT 제 6 조) : Art. 1 , 2 , 2.1 , 2.2

11)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EU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WT/DS397 참조

(협의 요청서에 인용)		, 2.4 , 2.6 , 3 , 3.1 , 3.2 , 3.4 , 4 , 3.5 , 4.1 , 5 , 5.4 , 6 , 6.1 , 6.2 , 6.4 , 6.5 , 6.10 , 9 , 9.2 , 9.3 , 9.4 , 12.2.2 , 17.6 , 18.4 GATT 1994 : Art. I , I : 1 , VI : 1 , X : 3 (a) 세계 무역기구 설립 협정 : Art. XVI : 4 가지 프로토콜
경과	접수 시기	2009 년 7 월 31 일
	패널 보고서 배포	2010 년 12 월 3 일
	상고인 본문 보고서 배포	2011 년 7 월 15 일
	제 21.5 조 패 널 보고서 배 포	2015 년 8 월 7 일
	제 21.5 조 상 소기구 보고 서 배포	2016 년 1 월 18 일
현재 결과		중국 승소
사례 분석 과정	사건 및 반덤핑의 기인	
	사건 WTO분쟁해결기구의 소송 과정	
	패널 및 항소기구의 주요판결	
시사점	비시장경제체제 ¹²⁾	
	중국 무역의 불공정한 대우는 철강 파스너의 반덤핑을 초래한 관건인데 국내 시장 경제 체제를 되도록 빨리 구축 및 완비하고 국제관례와 연결하는 발걸음을 가속화하여 중국 시장 경제 지위에 대한 유럽연합의 승인을 하루 빨리 쟁취해야 함	

12) 비시장경제체제는 국가가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거래를 독점하고 국내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며 이를 체제전환경제체제(Market Oriented Economies)와 구분하여 시장경제체제 이외의 모든 국가들을 NME 또는 CPE로 분류한다.(김완순, 엄인호, (1996).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 미국 캐나다 한국의 반덤핑조치연구 : 중국의 사례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6(16), 21-23.).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_y_e.htm 저자 정리.

(1) 사건 및 반덤핑의 기인

중국 전기기계 제품 수출입 회사로부터 알아본 것에 따르면 유럽연합 파스너(Fasteners) 반덤핑 사건은 2007년 11월 9일에 입안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7.6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9년 1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중국 철강 파스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재결을 발표하면서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 파스너 제품에 대해 무려 85%에 달하는 반덤핑 세금을 징수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2007년 초, 유럽연합의 9개 철강 기업이 임시 심리스 강관 산업협회를 설립하여 중국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심리스 강관에 대해 전 방위적인 증거 조사를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7월, 임시 심리스 강관 산업협회에서 유럽연합 위원회에 반덤핑 입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국 심리스 강관 기업이 유럽연합 심리스 강관 시장과 산업 미래 발전에 손해를 입히고 위협을 주고 있다고 고소하였다. 2009년 7월, 유럽연합 회원국은 13표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결과로 이 반덤핑 사건을 통과하고 2009년 10월 6일, 중국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심리스 강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17.7% 내지 39.2%의 최종 반덤핑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0년 9월 30일, 유럽연합에서는 원산지가 중국인 스테인리스 심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 입안 조사 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조사 기간, 유럽연합에 사건 관련 스테인리스 심리스 강관 제품을 수출한 중국 강관 기업은 사건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었고 조사 절차는 2010년 9월 30일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어 9개월간의 시간을 거쳤다. 2011년 6월 29일, 유럽

연합 위원회에서는 정식 공고를 발표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심리스 스테인리스관에 대해 “조사를 받은 모든 중국 관련 기업은 시장 경제 대우를 받은 기업이 없으므로 모두 48%—71.5%에 달하는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한다”는 반덤핑 예비 판결을 내린다고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서 차별 판결 대우를 받은 3개의 추출 조사 기업도 모두 재난을 당하였다. 원저우의 강남 강관 제조 유한회사는 48%에 달하는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상하이의 진창(金昌) 스테인리스관 제조 유한회사는 48.2%에 달하는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장쑤성 창수시의 화신(華新)특수강 유한회사는 71.5%에 달하는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에서 수출하는 심리스 강관에 대해 “유럽연합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와 위협을 초래” 한다는 것을 덤핑 확인 이유로 하였다. 중국의 관련 강관 기업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증거 수집에 대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몰라 항소에서 빈번히 실패하여 “심리스 강관 제품 수출의 길이 거의 막힌” 상황에 직면하였다.¹³⁾ 이 반덤핑 조치는 중국 파스너 제품의 대유럽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천여 개 수출 기업 및 10만 명 이상의 취업에 파급되었다. 중국 파스너 업계는 유럽연합의 재결에 대해 강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알맞은 조치를 취해 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2009년 7월 31일 중국은 비 시장경제체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개별 공급업자가 아닌 관련 공급국에 부과되고 개별관세는 특정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수출업자에게만 부과되는 기본규칙 제9(5)조에 관해서 EU와 협의 (consultation)를 요청하였다. 중국에 따르면 기본규칙은 WTO협정과 GATT 1994를 위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

13) 俞燕宁.(2012).貿易救濟案件中的“市場經濟地位”問題——基于中美双反案和中歐緊固件案的研究. 國際貿易問題, (5), 168-176.

원산지의 철강 파스너의 수입에 대한 최종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이사회 규칙 91/2009에 관해서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GATT 1994와 WTO협정을 위반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중국이 주장하기를 EU는 반덤핑협정의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규칙 제9(5)조를 적용함으로써 동종제품(like product)의 범위와 관련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결정뿐만 아니라 조사, 국내산업의 범위, 손상 행위 분석 그리고 반덤핑마진의 산정에서 이루어진 가격 비교 조정의 결여 등에 대해 반덤핑협정, GATT 1994, 그리고 시장접근원칙에 위반하여 행동했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10월 12일 중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인도, 일본, 노르웨이, 대만, 태국, 터키 그리고 미국은 제3자로 참여하였다. 2011년 7월 28일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었다.¹⁴⁾

(2) 이 사건 WTO분쟁해결기구의 소송 과정

2009년 10월 12일 중국은 DSB가 2009년 10월 23일에 설립한 패널 설립을 요청하여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인도, 일본, 노르웨이, 대만, 태국, 터키 및 미국은 제3자 진상하였다. 2009년 11월 30일 유럽 공동체는 2009년 12월 9일에 있었던 패널의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여 2010년 12월 3일, 패널 보고서는 회원들에게 회람되었다.

2011년 1월 10일 유럽 연합과 중국은 DSB에게 DSU 제 16.4 조에 규정된 60일 기간을 2011년 3월 25일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하였다. DSB는 2011년 1월 25일 회의에서 유럽 연합과 중국의 요청에 따라 2011년 3월 25일까지 DSB가 동의하지 않고 유럽 연합이나 중국이 DSB에 그 결정을 통보하지

14) 조현숙. (2012).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EU 반덤핑관세부과에 관한 WTO 사례 연구-유럽연합 반덤핑규칙 제 9 (5) 조 해석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13(1), 101-124.

않는 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한다. 2011 년 3월 25일 유럽 연합은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는 특정 이슈와 패널이 개발 한 특정 법적 해석에 대해 항소심 결정에 DSB에 항소하겠다고 통고하였다. 2011 년 3월 30일, 중국은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는 특정 이슈와 패널에 의해 개발 된 특정 법률 해석에 대한 항소 의사 결정을 DSB에 통보하였다. 2011 년 5월 24일, 항소기구 (Appellate Body) 의장은 항소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 된 시간으로 인해 항소기구가 60 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 할 수 없음을 DSB에 통보하여 항소기구 (Appellate Body)는 2011 년 7월 중순까지 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1 년 7월 15일, 항소기구 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 되었고 2011 년 7월 28일, DSB는 항소기구 보고서와 수정 보고서를 채택 하였다.

2011 년 8월 18일에 유럽 연합은 DSB에게 WTO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DSB의 권고 및 판결을 이행 할 것이며, 그렇게 하 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DSB에 통보하였다. 2012 년 1월 19 일, 중국과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이 DSB의 권고 및 판결을 이행하기위한 합리적인 기간은 14 개월 및 2 주일로 합의하여, 따라서 합당한 기간은 2012 년 10월 12일에 만료되었다.

2013 년 10월 30일 중국은 DSU 제 4 조 및 제 21.5 조에 따라 유럽 연합과 협의를 요청하여 2013 년 12월 5일 중국은 준수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2013 년 12 월 18 일 회의에서 DSB는 가능한 경우 문제를 원래 패널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여 일본과 미국은 제 3 자 권리를 유보하였다. 2014 년 3 월 17 일 중국은 사무총장에게 준수 패널의 구성을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 2014 년 3 월 27 일 사무총장이 준수 패널을 구성하여 2014 년 7 월 14 일 준수위원회 의장은 당사자와 협의 한 후 채택한 일정표에 따라 2015 년 5 월 당사자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DSB에 통보하였다. 2015 년 8 월 7 일 준수

보고서 보고서가 회원에게 배포되었다.

2015 년 9 월 9 일 유럽 연합은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는 특정 이슈와 패널에 의해 개발 된 특정 법적 해석에 대해 항소 의사 결정을 DSB에 통고하여, 2015 년 9 월 14 일 중국은 상호 항소 결정을 DSB에 통보하였다.

2015 년 11 월 6 일, DSU 제 17.5 조에 규정 된 60 일 기간 만료 시, 항소 기구는 DSB에게 이 항소에 대한 항소기구 보고서가 2016 년 1 월 18 일 WTO 회원국에 회람 될 것이라고 통보하여, 2016 년 1 월 18 일 준수 항소기구 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되었다. 2016 년 2 월 12 일 회의에서 DSB는 항소기구 보고서에 의해 수정 된 항소기구 보고서 및 패널 보고서 21.5 항을 채택하였다.

(3) 패널 및 항소기구의 주요판결¹⁵⁾

패널은 기본 규칙 제 9 조 (5) 항이 1994 년 GATT 협약 제 1 조 1 항 및 WTO 협정 제 16 조 4 항에 따라 AD 협약 제 6 조 10 항, 9.2 항 및 18.4 항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왜냐하면 생산자 비 시장 경제 국가들로 부터 이 조항에 구체화 된 개별 치료 시험은 개인의 투기 마진 계산 및 특정 기준의 성취에 대한 개별 의무 부과를 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패널은 파스너 조사에서 기본 규정 제 9 조 (5)의 적용이 광고 계약 6.10 및 9.2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패널은 또한 EU 조사 기관이 덤핑 수입 물량에 대한 AD 협약 제 3.1 조 및 제 3.2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패널은 DSB가 유럽 연합에 WTO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패널은 DSB 권고 및 판결이 유럽 연합에 의해 어떻게 이행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였다.

15)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EU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WT/DS397 참조

항소기구는 유럽 연합의 기본 반덤핑 규정 ("기본 광고 규제") 제 9 조 (5) 가 파스너 조사에서 "그대로" 및 "적용된 대로" 일관성이 없으며 조약 6.10 반덤핑 협약 9.2 항은 개별 투기 마진의 결정과 개별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조건으로 하여 "개별 치료 시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본 광고 규제법 제 9 조 (5) 조에 따라 중국과 같은 EU 법에 따라 비 시장경제국가 ("NME")로 지정된 WTO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국가 차원의 덤핑 마진과 국가의 반덤핑 관세는 수출 활동이 개별 치료를 보증하기 위해 국가와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없다. 반덤핑 협정 제 4.1에서 항소기구는 발견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정의 된 국내 산업이 생산 누구의 생산에서 총 국내 생산의 "주요 부분"을 대표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연합 (EU)은 의무를 일관성이 없다. 항소 바디 지지 유럽 연합 (EU)이 덤핑 결정에 중국의 생산자 사건의 프리젠 테이션을 위해 필요했던 제품 목록 화에 대한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 실패한 기사 6.2 및 반덤핑 협정 6.4에 따라 패널의 조사 결과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항소기구는 또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유럽 연합의 반덤핑 협정 제 2.4 조에 의거 한 의무와 투기 목적을 위한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조사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항소기구는 또한 유럽 연합이 반덤핑 협약 제 6.5.1 조와 일관성이 없으며, 국내 생산자가 기밀 정보가 기밀이 아닌 요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Panel의 발견을 지지 하였다. 유럽 연합 (EU)이 반덤핑 협약 제 6.5 조와 불만 사항을 제기한 것은 항의자의 신원과 이의 제기자를 기밀 정보로 취급했을 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항소기구는 반전 이 정보는 "정당한 이유"보여주는 필요 없이 기밀 조사에 참여하는 아날로그 국가의 생산자에 의해 제출처럼 다루었 경우 유럽 연합 (EU)이 제 6.5의 의무와 일관성 행동하는 패널의 발

견, 그리고 발견 중국 있다고 대신 패널이 앞에서 이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4) 시사점

유럽연합 파스너 사건은 2009년 7월 31일 중국 측에서 WTO 분쟁 메커니즘에 대해 기소해서부터 지금까지 6년 반이란 시간이 경과하였다. 중국은 이 사건의 원고로서 WTO 분쟁 사건의 완전한 소송과 집행 절차를 마쳐 상업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본 사건은 유럽연합 전통 반덤핑 법률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개별처우(individual treatment)수단이 WTO 규칙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핵심 분쟁 문제에서 중국은 전문가 팀의 지지를 받았고 외부로부터 획기적인 승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승소는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을 강제적으로 일부분 기업의 반덤핑세를 하향 조절하게 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유럽으로 되돌아가 유럽연합 시장을 되찾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DSB 관련 국별 세율과 단독 대우의 판정도 유럽연합이 관련 법률에 대해 수정하는 것을 촉진시켰다. 이는 앞으로의 중유럽 무역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의 각 공급업체에 단독 덤핑 폭과 단독 세율 대우를 부여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DSB에서 사건 심사시 보통 과거 사건을 감안하기에 이번 사건의 승소는 미국과 비슷한 “1국 1세(一國一稅)”규칙에 대해서도 시범 및 경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소 기관은 본 건에서 중국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의 작용을 명확히 하면서 그것은 중국 비시장 경제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정상 가치를 확정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되면 WTO 구성원은 더 이상 단순히 이 조항에 의거하여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고 차별대우조치를 실시할 수 없기에 중국이 WTO의 기타 사건에서 발언권을 얻고 공평 대우를 받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및 부분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국 시장이 불투명하고 본토 기업은 국유 성질을 많이 띠고 있으며 정부는 가격 조종 혐의가 있고 중국 시장 가격이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2001년 중국은 각국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관한 담판 과정에서 WTO가입으로 인한 이익을 하루 빨리 누리기 위해 시장 경제의 인정에서 양보하여 WTO가입 협의서에 일부분 국가에 잠시 시장 경제 지위를 주지 않고 만기일이 2016년 12월 12일까지인 15년간의 완화 기간을 준다고 명확히 작성할 것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중국 무역 파트너는 상술한 기간 내에 더욱 합리하게 합법적으로 반덤핑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비시장경제적 지위” 문제는 중국 수출 기업을 오랫동안 괴롭혔고 중국 기업이 지금에 와서 완전한 경제적 지위를 얻었다고 해도 미래의 무역 규제 분야에서 여전히 준엄한 도전에 부딪칠 수 있다. 6년 반의 기간에 걸쳐 중국은 이 사건의 원고로서 WTO분쟁 사건의 완전한 소송과 집행 절차를 마쳐 상업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이는 1979년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 WTO 가입 이래 WTO에 유럽연합을 기소한 첫 사건으로서 승소는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협의를, 서면 진술 제출, 공청회 등 전문가팀 심사, 항소 서면 진술, 피 항소 서면 진술, 항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중국은 마침내 차별 대우 입법 자체 및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파스너 반덤핑 조치의 불법성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분쟁 해결 절차 중의 증거 제시 업무는 기업들의 전력을 다한 협력을 떠날 수 없다. 분쟁 해결의 전체 과정에서 기업 혹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 세심하고 전면적인 입증은 정부와 기업, 업계 조직, 법조계 인사들이 밀접히 협력하여 막힘없이 통하는 정보 채널과 효과적인 협동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무역 분쟁 소송의 완성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한 동시에 정부의 지도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업, 협회와 정부의 연동이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분쟁 해결 중 개발도상국의 특혜 대우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분쟁 해결 실천에서 쌓은 경험에 근거해 규칙 담판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형성하여 관련 입법의 수정을 통해 중국 정부와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근본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국 WTO 가입 이래 WTO에서 유럽연합을 기소한 첫 사건으로서, 중국 정부가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WTO규칙을 활용해 유럽연합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 실시한 “차별 대우”입법이 WTO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전문가 팀과 상소 기관에 성공적으로 증명한 점은 국제 시장에서의 중국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WTO규칙과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WTO구성원의 확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중국 산업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WTO규칙이 불공정 무역 보호주의를 이겨낸 것이다 할 수 있다.

3. 중국 - 미국 DS414사건¹⁶⁾ (2010년)

-미국의 곡면 지향형 평면 압연 강철에 대한 상계 및 반덤핑 관세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the European Union)

<표7> DS414사건 요약 표

사건제목	미국의 곡면 지향형 평면 압연 강철에 대한 상계 및 반덤핑 관
------	------------------------------------

16)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United States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14 참조

		세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the European Union
원고		미국
피고		중국
제3국		아르헨티나; 유럽 연합; 온두라스; 인도; 일본; 대한민국;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베트남; 러시아 연방
참고 조항 (협의 요청서에 인용)		덤핑 방지 (1994 년도 GATT 제 6 조) : Art. 1 , 3.1 , 3.2 , 3.5 , 6.4 , 6.5.1 , 6.8 , 6.9 , 12.2 , 12.2.2 , 부속서 II GATT 1994 : VI 보조금 및 상계 조치 : 예술. 10 , 11.2 , 11.3 , 12.3 , 12.4.1 , 12.7 , 12.8 , 15.1 , 15.2 , 15.5 , 19 , 22.2 (iii) , 22.3 , 22.5
경과	접수 시기	2010 년 9 월 15 일
	패널 보고서 배포	2012 년 6 월 15 일
	상고인 본문 보고서 배포	2012 년 10 월 18 일
	제 21.3 조 (c) 중재 보고서 배포	2013 년 5 월 3 일
	제 21.5 조 패널 보고서 배포	2015 년 7 월 31 일
현재 결과		중국 패소
사례 분석 과정		사건 및 반덤핑, 보조금의 기인
		사건 WTO분쟁해결기구의 소송 과정
		패널 및 상소기구 및 항소기구의 주요판결
시사점		반덤핑 ¹⁷⁾ , 보조금 ¹⁸⁾
		중국은 장기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고 아직 WTO 규칙의 운용에 능숙하지 않으므로 WTO규칙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려면 여전히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음

17) 반덤핑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_y_e.htm 저자 정리.

(1) 사건 및 반덤핑, 보조금의 기인

이 사건은 미국의 대 중국 “grain-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 ES”, “방향성강판”, 또는 “강판”)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2009년 4월 중국 2개의 철강회사(Wuhan Iron and Steel (Group) Corporation(“WISCO”)와 Baosteel Group Corporation (“Baosteel”))은 미국이 방향성강판 수출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덤핑마진이 25%로 중국의 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의 조사를 신청하였다. 2009년 6월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반덤핑, 상계관세, 및 피해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 12. 10. 중국 상무부는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발표하였고, 2010. 4. 10.에 최종판정을 내렸다. 최종판정에서 중국내 철강 산업은 미국의 강판수출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의 덤핑강판수출 및 미국의 보조금과 중국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강판수출기업인 AK Steel Corporation(“AK Steel사”) 및 ATI Allegheny Ludium Corporation(“ATI사”)에 대해 각각 11.7% 와 12% , 기타 미국 수출기업들에 대해 44.6%의 보조금 율을 적용하였고, AK Steel사 및

18) 보조금 (補助金)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교부하는 돈인데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하위 정부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적인 혜택이다. 또한 민간이 정부 등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이양하는 금전은 부담금 (負擔金)이라 불린다. 하위 정부에 주는 돈은 주로 교부금으로 부른다.

ATI사에 대해 7.8% 및 19.9%, 기타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64.8%의 덤핑마진을 적용하였다.¹⁹⁾

(2) 이 사건 WTO분쟁해결기구의 소송 과정

2010년 9월 15일에 미국은 상무부에서 정한 미국의 곡물 지향형 평면 압연강철 ("GOES")에 대한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대책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보조금은 2009년 미국 복구 및 재투자 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Buy America"조항과 주정부 조달 법률이다. 미국은 중국이 SCM협정의 제 10 조, 제 11.2 조, 제 11.3 조, 제 12.3 조, 제 12.4.1 조, 제 12.7 조, 제 12.8 조, 제 15.1 조, 제 15.2 조, 제 15 조, 제 22 조 과 반덤핑 협약 제 1 조, 제 3.1 조, 제 3.2.3 조, 제 6.9 조 및 제 12.2 조 과 1994 년도 GATT 제 6 조과 같은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2월 11일 미국은 패널 설립을 요청하였다. 2011년 2월 24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 설치를 연기했다. 2011년 3월 25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을 설립하였다. 유럽 연합, 온두라스, 인도, 일본, 한국 및 베트남은 제 3 자의 권리를 유보하여 그 후 아르헨티나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 3 자의 권리를 유보하였다. 2011년 5월 10일 패널이 구성되었고 2011년 9월 19일 패널 위원장은 DSB에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패널이 채택한 일정표에 2012년 5월까지 최종 보고서가 당사자들에게 발행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2012년 6월 15일, 패널 보고서는 회원들에게 회람되었다.

2012년 7월 20일, 중국은 DSB에 항소문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는 특정 법률문제와 법적 해석에 항소하였다. 2012년 9월 18

19) 김상만. (2014). 하권: WTO 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관련 미국-중국 WTO 철강분쟁사건 (DS 414) 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 43, 1165-1200.

일, 항소기구 (Appellate Body) 의장은 보고서 완성 및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항소기구가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회람 할 수 없음을 DSB에 통보하였다. 항소기구 보고서는 2012 년 10월 18일까지 배포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기구 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되었고 2012년 11월 16일의 회의에서 DSB는 항소기구 보고서에 의해 지지 된 항소기구 보고서와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12년 11월 30일의 DSB 회의에서 중국은 WTO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DSB 권고안 및 의결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년 2월 8일 미국은 DSU 제 21.3 조 (c) 항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할 것을 요청하여 2013년 2월 22일 미국은 사무총장에게 중재인 임명을 요청하였다. 2013년 2월 28일 사무총장은 Claus-Dieter Ehlermann을 DSU 제 21.3 (c) 항에 따라 중재자로 지명하여 2013년 3월 4일, Ehlermann은이 임명을 수락하였다. 2013년 5월 3일 중재 보고서가 회원에게 배포되었고 2013년 8월 19일 중국과 미국은 DSU 제 21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합의 절차에 대한 DSB에 통보하였다.

2014년 1월 13일에 미국은 DSU 제 21.5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여 2014년 2월 13일 미국은 준수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014년 2월 26일 회의에서 DSB는 가능한 경우 미국이 제기 한 문제를 원래의 패널에게 회부하기로 합의했고 유럽 연합, 인도, 일본 및 러시아 연방은 제 3 자 권리를 유보하여 2014년 3월 17일 준수 패널이 구성되었다. 2014년 9월 22일 컴플라이언스 패널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 패널이 2015년 2/4 분기에 최종 보고서를 당사자에게 발표 할 것으로 DSB에 통보하였다.

2015년 7월 31일 준수 보고서 보고서가 회원에게 배포되었다. 2015년 8월 31일 회의에서 DSB는 준수 보고서를 채택하여 2015년 8월 31일 중국은 2015년 4월 10일에 미국으로부터의 "GOES"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

세 조치가 만료되었음을 DSB에 통보하였다.

(3) 패널 및 상소기구 및 항소기구의 주요판결²⁰⁾

미국은 중국이 SCM 협정 제 11.2 조 및 제 11.3 조와 불일치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였다. MOFCOM은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11 개 프로그램에 대해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패널은 상계 관세 조사에서 증거의 충분함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대한 의무는 SCM 협정 제 11.3 조에서 표현을 찾았는데, 수사 당국은 조사 기관이 신청서에서 증거의 정확성과 개시를 정당화하는 것이 충분한 지 여부 위해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패널은 제 11.2 조에 규정 된 "충분한 증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본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결론을 도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된 11 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하여, 패널은 중국이 SCM 협정 제 11.3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입양 신청자는 여러 범주의 정보와 관련하여 외교 통상부 기밀 취급을 모색하고 획득하였다. 미국은 MOFCOM이 신청자에게 정보의 비 기밀성 요약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SCM 협약 12.4.1 및 반덤핑 협약 6.5.1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MOFCOM이 두 응답 기업의 덤핑 마진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와 계산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반덤핑 협정 제 12.2.2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MOFCOM이 예비 결정 또는 최종 결정에서 미국 정부 조달 법규에 따른 경쟁 입찰 과정에서 외국 생산자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인 가격이 시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

20)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United States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14 참조

였다. 이익 결정을 위한 가격은 미국에 따르면, 이는 SCM 협정 제 22.3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MOFCOM의 특정 덤핑 및 보조금 을 산정에 이용 가능한 사실에 대한 다수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패널은 MOFCOM이 2 명의 알려진 응답자 수출 자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사실에 부적절하게 의지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했지만 MOFCOM이 적용된 사실을 적용하는 방식은 Article 12.7 SCM Agreement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또한 반덤핑 협약 제 6.9 조, 제 12.2 조 및 제 12.2.2 조와 SCM 협약 제 12.8 조, 제 22.3 조 및 제 22.5 조에 따라 중국이 본질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종 결정에서 "알려지지 않은"미국 수출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의 적용으로 이끄는 결과 및 결론을 제시한다. 패널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덤핑과 보조금 수입이 상당한 가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미국은 MOFCOM의 이러한 가격 효과에 대한 분석은 결론적이었고, 객관적인 증거 조사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긍정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중국의 반덤핑 협정 제 3.1 조 및 제 3.2 조와 SCM 협정 제 15.1 조 및 제 15.2 조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가격 효과 분석을 뒷받침하는 필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반덤핑 협약 제 6.9 조 및 제 12.2.2 조와 제 12.8 조에 따라 가격 효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그리고 SCM 협정의 22.5. 패널은 또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MOFCOM이 반덤핑 협정 제 3.5 조 및 SCM 협정 제 15.5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MOFCOM은 그 기간 동안 국내 GOES 산업의

용량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잘못 결론을 내렸다. 조사가 국내 산업의 부상 원인이 될 수는 없었다. 또한 미국은 MOFCOM의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 3.1 조 및 SCM 협정 제 15.1 조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조항에 구체화 된 "객관적인 검사"와 "긍정적인 증거"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 6.9 조 및 제 12.2.2 조와 SCM 협정 제 12.8 조 및 제 22 조 제 2 조와 불일치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여 중국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본질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 원인 발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한다. 패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였다.

항소기구는 MOFCOM의 가격 효과가 반덤핑 협정 제 3.1 조 및 제 3.2 조 및 SCM 협정 제 15.1 조 및 제 15.2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패널과 마찬가지로, 항소기구는 제 3.2 조와 제 15.2 조는 가격 우울증이나 억압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한 조사 권한만을 요구하고 대상 수입과 가격 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중국의 해석을 거부하였다. 항소기구는 반덤핑 협약 제 6 조 제 9 항 및 SCM 협정 제 12.8 조와 불일치하게 행동한 패널의 발견을 지지하여 항소기구는 또한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 12.2.2 조와 SCM 협정 제 22.5 조와 일관성이 없다는 판결을 지지하였다. 2012년 11월 16일의 회의에서 DSB는 항소기구 보고서에 의해 지지된 항소기구 보고서와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여 2015년 8월 31일 회의에서 DSB는 준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4) 시사점

사건의 중재 결과로부터 보았을 때 중국 상무부의 일부 주장은 DSB전문가팀과 항소기구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상무부의 적지 않은 수단은 WTO 무역구제조치 절차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문가팀에서 무역구제조치 절차에 대해 해명함으로써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및 중재판정의 난이도를 강화시켰다. 본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몇몇 문제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조사 절차의 전개에 대해 중국에서는 보조금에 대해 존재하고 있는 증거의 수집에 더욱 중시해야 한다. (2)비 기밀 적요의 폭로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기구의 구성원 측 및 이해관계 측 각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에서 각자 의무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송 중의 적용 법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불확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제공한 비 기밀 적용 내용의 충분 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공한 적요가 기밀정보의 실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3)절차와 관련되는 투명도와 절차 공정성 문제에 대해 중국에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4)논술에서는 논리성을 중시하고 자체적으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논증은 정확하고 충분해야 하며 깊이 파고들지 않거나 중도에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고 또한 최근 몇 년간 상계관세 조사의 중점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WTO규칙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은 중국 대외무역 발전에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절차 방법의 규율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에 있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본 건 결과도 중국은 아직 WTO 규칙의 운용에 능숙하지 않으므로 WTO규칙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려면 여전히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4. 중국 - 일본 DS454사건(2012년), 5.중국-유럽DS460사건²¹⁾
(2013년)

-연합의 고성능 스테인레스 스틸 이음매없는 튜브 (“HP-SSST”)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Japan, EU

<표8> DS454, DS460사건 요약 표

사건제목		연합의 고성능 스테인레스 스틸 이음매없는 튜브 (“HP-SSST”)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Japan, EU
원고		일본, 유럽 연합
피고		중국
제3국		인도;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미국;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참고 조항 (협약 요청서에 인용)		덤핑 방지 (1994 년도 GATT 제 6 조) : Art. 1 , 2.2, 2.4, 2.4.2, 3.1 , 3.2 , 3.4 , 3.5 , 5.3 , 5.8 , 6.5 , 6.5.1 , 6.8 , 6.9 , 7.4 , 12.2 , 12.2.2 , 부속서 II GATT 1994 : VI
경과	접수 시기	2012 년 12 월 20 일 (중국-일본) 2013 년 6 월 13 일 (중국-유럽 연합)
	패널 보고서 배포	2015 년 2 월 13 일 (유럽 연합) 2015 년 2 월 14 일 (일본)
	상고인 본문 보고서 배포	2015 년 10 월 14 일
	현재 결과	중국 패소
사례 분석 과정		사건 및 반덤핑의 기인
		WTO분쟁해결기구의 소송 과정
		패널 및 상소기구 및 항소기구의 주요판결
시사점		반덤핑

21)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Japan, EU, WT/DS454/DS460 참조

	WTO분쟁 해결 센터가 WTO규칙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는 방법은 중국의 숙련된 WTO관련 규칙에 대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적인 발언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1) 이 사건 및 반덤핑의 기인

이 사건은 일본, 유럽연합의 대 중국 "고성능 스테인레스 스틸 이음매 없는 튜브 ("HP-SSST")"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일본, 유럽 연합은 수입한 다수의 이음매 없는 강철 파이프가 저가 덤핑이 대량적으로 중국시장이 들어온다. 2008년이 이후부터 중국시장은 세진 이익과 투자 수익률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이다. 관련 제품 대량 덤핑 수입 때문에 국내 생산 확대 사업은 덤핑 수입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2011년 7월 15일 중국 2개의 철강회사(Jiangsu Wujin stainless steel pipe Factory Group Co., Ltd와 Changshu Huaxin Special Steel Co., Ltd)은 중국국내 철강 상관 관련 산업을 대표적으로 중국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여 유럽 연합 및 일본에서 수입한 관련 고성능 스테인레스 스틸 심리스 강관 (이하 이음매 없는 강관이라 한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다. 2011년 9월 8일 상무부가 정식으로 입안 공고를 내고 유럽 연합 및 일본에서 수입한 관련 고성능 스테인레스 스틸 이음매 없는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하였다.²²⁾ 덤핑 조사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피해조사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지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2년 11월 8일에 중국 상무부

22) 郭倩. (2016). The Anti-dumping Duties Case Analysis of Japan and EU. China Concerning HP-SSST 日本歐盟訴中國無縫鋼管反傾銷稅案研究, 2-36.

<2012>제72호 공고를 발표하고 최종 판정 품목에 덤핑 적용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청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각 기업의 덤핑 상황에 근거하고 2012년 11월 9일부터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의 스미모토社와 고베社에게 각각 9.2%, 14.4%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유럽연합의 Tubacex社와 Salzgitter社에게 각각 9.7%, 11.1%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과 유럽연합은 각각 2012년 12월 20일 및 2013년 6월 13일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를 제소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실제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의무적인 협의(consultation) 요청을 의미한다.²³⁾

(2) 이 사건 WTO분쟁해결기구의 소송 과정

2012년 12월 20일 일본은 중국 상무부에서 정한 일본의 고성능 스테인레스 원산스틸 심리스 튜브 ("HP-SSST")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에 관한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그 조치들이 1994 년도 GATT 제 6 조; 반덤핑 협정의 제 1 조, 제 3.1 항, 제 3.2 항, 제 3.4 항, 제 3.5 항, 제 5.3 항, 제 5.8 항, 제 6.5 항, 제 6.5.1 항, 제 6.8 항, 제 6.9 항, 제 7.4 항 및 제 12.2 항 및 제 12.2.2 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13년 1월 15일에 유럽 연합 (EU)은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이어서 중국은 DSB에 유럽 연합의 협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통보하였다. 2013년 4월 11일 일본은 패널 설립을 요청하여 2013년 4월 24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 설치를 연기하였다.

2013년 5월 24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유럽 연합, 인도, 한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은 제3자의 권리를 유보하여 그 후 사우디 아라비아와 터키는 제 3 자의 권리를 유보하였다. 2013년 7월 17일 일본은 사무총장

23) 공수진. (2017). 중국-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사건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4(1), 289-319.

에게 패널 구성을 요청하여 2013년 7월 29일 사무총장이 패널을 구성했다. 2013년 8월 30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인도, 일본, 한국, 터키 및 미국은 제 3 자의 권리를 유보하였다. 그 후 러시아 연방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3자의 권리를 유보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패널은 2013년 9월 11일에 구성되었다.

2013년 6월 13일 유럽 연합 (EU)은 유럽 연합 (EU)의 특정 고성능 스테인레스 스틸 이음매 없는 강관 ("HP-SSST")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관한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MOFCOM") Notice No. 21 [2012] 및 Notice No. 72 [2012]를 포함하여 모든 부속서 및 그 개정을 포함한다. 유럽 연합은 그 조치가 반덤핑 협정의 제 1 조, 제 2.2 조, 제 2.4 조, 제 2.4.2 조, 제 3 조, 제 3 항, 제 3 항, 제 3 항, 제 4 항, 제 6.5 항, 제 6.5.1 조, 제 6 항, 제 6.8 조, 제 6.6 조, 제 12.2 및 제 12.2.2 조 과 1994 년도 GATT 제 6 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6월 27일 일본은 합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그 후 중국은 DSB에 일본의 협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통보하였다. 2013년 8월 16일 유럽 연합 (EU)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2013년 8월 30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인도, 일본, 한국, 터키 및 미국은 제3자의 권리를 유보하여 그 후 러시아 연방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3자의 권리를 유보하였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패널은 2013년 9월 11일에 구성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패널 보고서가 회원에게 배포되었다. 2015년 3월 12일, 중국과 일본은 DSB에게 DSU 제 16.4 조에 규정 된 60 일 기간을 2015년 5월 20일까지 연장하는 결정 초안을 채택 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5년 3월 23일 회의에서 DSB는 2015년 5월 20일까지 (i) DSB가 컨센서스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ii) 중국 또는 일본이 패널 보고서에 이의 제기 결정을 DSB에 통보하지 않는 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한다.

2015년 5월 20일에 일본은 DSB에게 항소 의사 결정에 패널 보고서에서 법률 및 법 해석에 대한 특정 이슈에 대한 항소 결정을 통보하여 2015년 5월 26일에 중국은 DSB에 항소 의사 결정에 패널 보고서에서 법률 및 법 해석에 대한 특정 문제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였다. 동시에 2015년 5월 20일, 중국은 DSB에 항소 의사 결정에 패널 보고서에 법률 및 법 해석에 대한 특정 문제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여 2015년 5월 26일에 유럽 연합은 DSB에 항소 판결에 대해 법률 및 법 해석의 특정 문제에 대한 패널 보고서의 항소 결정을 통보하였다.

2015년 7월 28일, DSU 제17.5조에 규정된 60일 기간 만료 시, 항소기구는 DS454 및 DS460의 항소 절차뿐만 아니라 항소 절차에서의 항소 기관 보고서가 WTO에 회람 될 것이라고 DSB에 통보하였다. 2015년 10월 14일, 항소기구 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되었다. 2015년 10월 28일 회의에서 DSB는 항소기구 보고서와 수정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15년 11월 25일의 DSB 회의에서 중국은 WTO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DSB의 권고와 판결을 시행할 의도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19일 일본 및 유럽연합과 중국은 DSB 권고 및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은 항소기구 채택 일 및 패널 보고서로부터 9개월 25일로 합의했다고 DSB에 통보하여 따라서 합당한 기간은 2016년 8월 22일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었다.

(3) 패널 및 상소기구 및 항소기구의 주요판결²⁴⁾

이러한 분쟁은 일본과 유럽 연합의 특정 고성능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이 있다. 항의자들은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

24)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Japan, EU, WT/DS454/DS460 참조

관세와 중국 조사 기관 (MOFCOM)이 수행 한 조사가 반덤핑 협정의 다양한 절차 적 및 실질적인 규정 및 1994 GATT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민원인은 MOFCOM의 상해 결정 및 MOFCOM의 특정 절차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제기하여 유럽 연합 (EU)도 MOFCOM의 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실질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제소자들은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부상을 입혔다는 MOFCOM의 결정에 대한 제 3 조의 주장을 제기하여 그들은 대상 수입의 가격 효과에 대한 MOFCOM의 고려가 반덤핑 협정 제 3.1 조와 제 3.2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덤핑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MOFCOM의 평가는 반덤핑 협정 제 3.1 조 및 제 3.4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에 대한 중대한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MOFCOM의 결정은 반덤핑 협정 제 3.1 조 및 제 3.5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패널은 제 3.1 조, 제 3.2 조, 제 3.4 조 및 제 3.5 조에 따라 다수의 청구를 지지하였으나, 모든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패널은 제 3.2 조에 따라 MOFCOM이 대상 수입에 의한 가격 인하가 국내 가격에 대한 하향 압력을 가하는 실제 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었고 실패했는지에 대한 불만 제기 자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민원인은 MOFCOM이 알 수없는 수출업자에 대한 모든 다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 제 6.8 조 및 부속서 II : 1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불만 제기 자의 주장을 기각하여 MOFCOM이 웹 사이트에 수출업자 설문서를 게시했기 때문에 MOFCOM이 알려지지 않은 수출업자 / 생산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사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항의자는 MOFCOM이 덤핑 및 부상 결정에 관한 본질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의무와 제 6 조 제 9 항의 의무 및 모든 다른 사람의 금리에 대한 결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 서면 설명을 사용하는 MOFCOM에 관한 불만 제기자의 주장을 기각하여 패널은 MOFCOM이 이미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언급한 본질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을 제공했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MOFCOM이 덤핑 마진 계산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패널은 또한 MOFCOM이 부상 결정에 관한 본질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불만 제기자의 주장을 지지하여 패널은 MOFCOM이 다른 모든 비율에 관한 본질적인 사실을 공개하는데 실패했다는 불만 제기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항의자는 MOFCOM이 최종 결정에 대한 공개 공지가 반덤핑 협정 제 12.2 조 및 제 12.2.2 조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MOFCOM의 부상 결정에 관한 정보와 MOFCOM의 모든 다른 평가에 관한 정보에 관한 것이었다. 패널은 MOFCOM의 부상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구의 특정 측면을 거부하고 다른 부분과 관련하여 사법 경제를 행사하여 패널은 MOFCOM의 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구의 한 측면을 지지했지만 다른 판결은 거부하였다.

항소인은 중국이 반덤핑 협약 제 6.5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MOFCOM은 청원자의 그러한 "대우"에 대한 적절한 표시 없이 특정 보고서의 전문을 기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반덤핑 협약 제 6.5.1 조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MOFCOM은 그러한 비공식적인 이유가 왜 불가능한 지에 대한 충분한 기밀이 아닌 요약이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널은 항의자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지지하였다.

항소법원은 반덤핑 협정 제 7.4 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4 개월을 초과하는 잠정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중국은 그 조항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

하여 패널은 이 주장을 지지하였다.

유럽 연합 (EU)은 MOFCOM의 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청구는 (i) SG & A 금액의 사용 (반덤핑 협약 제 2.2.1 조, 2.2.1.1 조 및 2.2.2 조); (ii) 비교의 공정성 (반덤핑 협정 제 2.4 조); 그리고 (iii) 특정 행정 비용의 이중 계산 혐의 (반덤핑 협약 제 6 조 7 항 및 부속서 1 항)하였다. 패널은 SG & A 금액에 관한 유럽 연합의 제 2.2.2 항을 지지했고, 그 문제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 경제를 행사하여 패널은 제 2.4 조에 따라 유럽 연합의 공정한 비교 주장을 지지하였다. 패널은 특정 행정 비용의 중복 계산에 관한 유럽 연합의 제 6 조 7 항 및 부속서 1 : 7에 따른 절차 적 측면을 지지하였다.

일본과 유럽 연합은 반덤핑 협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 1 조와 1994 GATT 제 6 조와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패널은 그 결과적 주장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중국이 반덤핑 협약 제 6 조 제 7 항 및 제 7 항 제 7 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지지하였다. MOFCOM은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유일한 정보에 근거하여 SMST의 특정 정보 수정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상소기구는 MOFCOM이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단 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제 3.1 조 및 제 3.4 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유럽 연합의 주장을 거부 한 패널의 조사 결과를 반전시켰다. 항소기구는 또한 반덤핑 협정 제 3.1 조 및 제 3.5 조에 따라 중국이 행동을 취한 것으로 패널이 인정한 바를 지지하였다. 왜냐하면 MOFCOM은 다른 알려진 요인들로 인한 부상이 덤핑 수입품에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소기구는 유럽 연합이 MOFCOM의 가격 효과 및 영향 분석과 관련하여 MOFCOM의 시장 점유율 및 MOFCOM의 비 속성 분석과 관련한 것 이외의 제 3 조 독립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발견을 지지하였다. 항소기구

는 반덤핑 협약 제 6.5 조에 따라 기밀로 취급되고 WTO 분쟁 해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밀 유지 요건에 따라 WTO 패널에 당사자가 제출 한 정보가 BCI와 같은 추가적인 기밀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각 경우 패널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 그러므로 항소기구 (APN)는 패널이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합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선언하여 항소기구 (Appellate Body)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28일 회의에서 DSB는 항소기구 보고서와 수정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4) 시사점

이상의 사례분석에서 중국 철강분쟁관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보고 WTO분쟁 해결 센터가 WTO규칙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는 방법은 중국의 숙련된 WTO관련 규칙에 대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적인 발언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건의 조사 대상인 고성능 스테인리스강 무봉강관을 예를 들면, 중국 시장에서 2008년 전까지는 해외 제품이 독점하고 있었지만 그 뒤로 중국 무봉강관이 규모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생산된 무봉강관 품질이 기준에 도달하여 여러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주요 관련 생산업체에서는 해외 제품 저가 판매의 영향을 받아 국산품 판매량이 뚜렷하게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무부에 해외 관련 무봉강관 수입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출하였다. 전문가 팀과 상소기구의 의견으로부터 보면, 그들은 중국에서 제기한 절대다수 소구를 부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국내 반덤핑 조사 절차에서든 WTO 분쟁해결 중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면에서든 모두 부족함이 존재하고 중국 기업은 증거 의식이 비교적 약하며 국내 주무기관을 협조하여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방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정부부서의 조사 중점과 소송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면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최종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본 건은 중국에서 해외 수입 무 봉 강관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조사를 제출한 사건이므로 국내 반덤핑 조사 절차에서나 WTO 소송에 대응 방면에서나 모두 경험을 쌓았다. 해외 제품에 대해 주도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 규칙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WTO 규칙으로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일단 개시되면 자세하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며 WTO 관련 규칙 기준을 착실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확보하려면 법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정부, 기업 간의 협력을 반드시 강화함으로써 제3자 평가기관과 관련 동업조합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사는 체계적인 공정으로 전체 조사 과정은 시간 소모가 많고 증거 수집 난이도가 높으며 기술적 요구도 높아 각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없다. WTO 분쟁해결센터에 소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국가 간 법률형식과 다자 무역 규칙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 경쟁을 진행하는 일종의 특수한 방식이다.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마땅히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더욱 중시하고 및 적절하게 활용하여 불리한 것을 피하고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면서 국가 대외무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6. 중국 - 미국 DS544사건²⁵⁾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특정 조치 United States - Certain

25)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 참조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표9> DS544사건 요약 표

사건제목	미국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특정 조치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원고	중국	
피고	미국	
참고 조항 (협약 요청서에 인용)	1994 년 GATT : Art. I : 1 , XIX : 1 , XIX : 2 , II : 1 (a) , X : 3 (a) , II : 1 (b) Safeguards : Art. 2.1 , 2.2 , 4.1 , 4.2 , 5.1 , 7 , 11.1 (a) , 12.1 , 12.2 , 12.3	
경과	접수 된 상당 요 청	2018 년 4 월 5 일
현재 상태	진행중	
사례 분석 과정	사건 기인	
	사건 소송 과정	
시사점	국가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	
	중·미 무역 전쟁은 앞으로의 무역 마찰이 갈수록 많아지고 갈수록 빈번하게 하는데 중국은 충분한 준비를 하여 적극적인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적극적 주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며 기타 무역루트 혹은 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미국 시장에 대한 의지를 줄여야 하여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 232조치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은 철강은 국가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치의 설계와 구조로부터 보면 그 목적은 단순히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님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주: 2018년 8월말 기준

(1) 사건 기인

2017년 4월 19일, 미국 상무장관은 1962년 《무역확대법 (TradeExpansion Act)》 제 232조에 따라 수입 강철이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펼친다고 밝혔고 미국 대통령은 되도록 빨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무부에서는 즉시 의견을 구하는 공고를 내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방부, 국무원, 재정부, 내무부, 국토안전부, 국제무역위원회와 무역대표부 등부서와 협의하였다. 2018년 1월 11일, 상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철강은 미국의 국가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나) 기존 수입량은 미국의 철강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다) 철강의 대량 수입은 국내 강재를 생산을 줄임으로써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라) 전 세계 강철 생산 과잉은 국내 경제 부진을 초래한 원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쿼터 혹은 관세로 수입을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소시킬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강철 조사를 제출한 몇일 뒤 2017년 4월 26일, 미국 상무장관은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고 2018년 1월 17일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미국 정부는 어떤 전략적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알루미늄괴, 알루미늄 빌릿 혹은 반제품 알루미늄재(예를 들면 알루미늄판)를 비축하지 않는다. (나)알루미늄 대량수입은 미국의 동종업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다)세계적은 알루미늄 생산 과잉은 미국 알루미늄 산업과 미국 경제의 부진을 초래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유사한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2018년 3월 8일, 미국 대통령은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3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²⁶⁾

(2) 이 사건 소송 과정²⁷⁾

미국에서 “232 조사”개시 및 조치를 취하자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그것은 미국 무역법의 제232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고 이것으로 행동을 취한 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제232조의 하문 “국가안보 보장”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은 주요한 미국 상무부는 미국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법 제232조항에 따라 수입 강철에 대해 25% 증가 세를 징수하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0% 증가 세를 각각 징수한다고 밝혔다. 3월23일 효력이 발생한 후 유럽연합 28개 구성원을 포함한 40여개 WTO구성원이 WTO회의에서 이에 대해 발언하였다. 원칙상에서 강철,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라는 것이다. 미국은 상무장관이 1962년 「무역확장법안」 제232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대량의 강재와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한 생산 과잉 상황은 「국가안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GATT 제21조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한 뒤 유럽연합과 중국 등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고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함께 제안을 발언하면서 미국의 이 조치는 GATT 및 WTO 방어조치 협정과 일치하지 않다고 특별히 제출하였다.

3월 26일, 중국은 《세이프가드조치 협정》 제12조 3항에 근거하여 미국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협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무역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게다가 중국은 기타 조치를 취할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이 조치는 비 안전 세이프가드조치가 아니기 때문

26) 彭德雷, 周國歡, & 楊國華. (2018). 國際貿易中的“國家安全”審視——基于美國“232 調查”的考察. 國際經貿探索, 5, 006.

27)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 참조

에 중국과 이 협정에 의거하여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5일, 중국은 WTO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을 제소하면서 미국의 조치는 GATT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 협정》, GATT 제2조, 제1조와 제10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치가 보장조치에 속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하였고 각 WTO 구성원마다 모두 GATT 제21조에서 규정한 기본 안전 이익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2018 년 4 월 13 일에 미국은 DSB 위원장에게 2018 년 4 월 4 일자 중국의 서한이 미국의 견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협의에 기꺼이 회부 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 표시를 회원들에게 회람하도록 요청하였다. DSU 제 4 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018 년 4 월 17 일 인도는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2018 년 4 월 18 일 러시아와 태국은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2018 년 4 월 19 일, 유럽 연합 (EU)과 홍콩, 중국은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시사점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 232조치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은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치의 설계와 구조로부터 보면 그 목적은 단순히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변칙적 세이프가드조치이다. 왜냐하면 이 조치가 실시하는 기본 논리는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손해”로 보장조치를 실시하는 일반 법률 원칙과 일치한다. WTO 구성원들이 분분히 함께 일어나 반대하고 중국에서 제출한 WTO분쟁 의논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인도, 러시아, 태국, EU 및 홍콩에서 의논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미국이 협의 단계에서 이 국가들과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찾아 특히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막을 내릴 경우 WTO의 전반적인 최대 이익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WTO분쟁해결 메커니즘의 곤경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GATT 제21조를 인용한 것이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민감한 국가주권 사항을 평가하는 것에 관련되어 WTO에서도 논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사건이 실제로 분쟁해결패널 단계에 들어갈 경우 결과가 어떨든 GATT 제21조에 대한 WTO의 중재는 장래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안전예외”인용에 대해 기타 국에 선례를 만들어 기존의 다자간 무역 규칙에 더 한층 깊은 충격을 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2018년, 중·미 무역이 직면한 최대 도전은 아마 미국 무역 보호주의 정책의 성행일 것이다. 트럼프 출범 이후 여러 차례의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 컴백을 적극 권장하고 무역 보호주의를 추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분석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은 전 세계 무역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성장은 무역 보호주의와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 경제가 번영할 경우 각국은 자유 무역을 주장하여 무역 보호 정도가 낮고, 경제 불황일 경우 무역 보호 추세가 강화된다. 미국이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 개시한 “무역 보호 232조사”는 단기간 내에 미국 철강 기업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반드시 보복 수단을 취하여 다른 방면에서 미국에 대해 무역 보호 정책을 실시하게 되기에 양국의 경제 발전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 중국 - EU DS407사건(2010)²⁸⁾

-중국 - 유럽 연합의 특정 철 및 강철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on Certain Iron and Steel Fasteners from the European Union

28)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EU -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on Certain Iron and Steel Fasteners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07/참조

<표10> DS407사건 요약 표

사건제목	중국 - 유럽 연합의 특정 철 및 강철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on Certain Iron and Steel Fasteners from the European Union
원고	유럽 공동체
피고	중국
참고 조항 (협약의 요청서에 인용)	덤핑 방지 (1994 년도 GATT 제 6 조) : Art. 2.2 , 2.2.2 , 2.4 , 3.1 , 3.4 , 3.5 , 6.1.3 , 6.2 , 6.4 , 6.5 , 6.10 , 7 , 12.2.1 GATT 1994 : VI : 1 , X : 3 (a)
현재 결과	중국 승소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2010 년 5 월 7 일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EU)의 특정 철 또는 강철 패스너에 대한 중국의 잠정 반덤핑 관세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 연합은 문제의 잠정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는 상무부 고시 115 (2009)가 WTO 반덤핑 협정 및 GATT 조항의 다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럽 연합은 또한 제 56 조 중국 반덤핑 규정의 제 조는 반덤핑 협정, DSU 및 GATT 1994의 다양한 조항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요청은 특히 제 56 조는 "한 국가 (지역)가 반덤핑 관할권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중화 인민 공화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덤핑 조치는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해당 국가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중국 - 미국 DS422 사건 (2011)²⁹⁾

29)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WT/DS422/참조

-중국산 새우 및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 조치
Anti-Dumping Measures o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표11> DS422사건 요약 표

사건제목	중국산 새우 및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 조치 Anti-Dumping Measures o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원고	중국
피고	미국
참고 조항 (협약 요청서에 인용)	덤핑 방지 (1994 년도 GATT 제 6 조) : Art. 1 , 2.1 , 2.4 , 2.4.2 , 5.8 , 9.2 , 9.3 , 9.4 , 11.3 GATT 1994 : Art. VI : 1 , VI : 2 (a) , VI : 2 (b)
현재 결과	중국 승소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2011 년 2 월 28 일 중국은 중국의 특정 온난 한 새우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관해 미국과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미국 상무부 ("USDOC") 가 원 수입 조사에 대한 덤핑 마진을 계산하기위한 원래의 조사 및 몇몇 관리 검토에서 제로화 (zeroing)를 사용하는 것은 제 VI : 1 및 VI : 2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선저 검토에서 원래의 수사 및 행정 검토에서 산정 된 투기 마진에 대한 USDOC의 의존 이 반덤핑 협정 제 11.3 조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2011 년 7 월 22 일, 중국은 다이아몬드 톱날과 중국산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미 농무부 (USDOC)의 제로 관행과 관련하여 미국

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USDOC의 제로 관행이 개별적으로 조사된 응답자를 위해 인위적으로 창출했거나 적어도 덤핑 마진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2011 년 10 월 13 일 중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2011 년 10 월 13 일 중국과 미국은 DSB에 절차 약정을 통보하였다. 패널은 개별검사 대상 수출업자 / 생산자를 위한 덤핑 마진 계산시 USDOC의 영점 조정 사용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패널은 3 건의 덤핑 방지 조사에서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미 농무부 (USDOC)가 사용하는 "제로 (zeroing)"방법론이 반덤핑 협정 제 2.4.2 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이 조항에 따른 의무 사항과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였다. 2012 년 7 월 27 일 중국과 미국은 DSB 권고 및 판결을 이행하기위한 합리적인 기간은 8 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고 DSB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은 2013 년 3 월 23 일에 만료되었다. 2013 년 3 월 26 일 개최 된 DSB 회의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DSB 권고 및 판결을 시행하였다고 DSB에 통보하였다. 중국은 사기 진영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DSB 권고안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미국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에게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³⁰⁾.

9. 중국 - 미국 DS437 사건 (2012)³¹⁾

-중국의 특정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 조치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표12> DS437사건 요약 표

사건제목	중국의 특정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 조치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	--

30) 白玫.(2013). 美國對華暖水蝦反傾銷案研究 (Master's thesis, 西南政法大學).

31)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437/참조

원고	중국
피고	미국
제3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 연합; 인도;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터키; 베트남;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참고 조항 (협약 요청서에 인용)	보조금 및 상계 조치 : 예술. 1.1 , 1.1 (a) (1) , 1.1 (b) , 2 , 10 , 11 , 11.1 , 11.2 , 11.3 , 12.7 , 14 (d) , 30 , 32.1 GATT 1994 : Art. VI , XXIII 의정서 의정서 : Art. 15 명
현재 결과	중국 승소

주: 2018년 8월 말 기준.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2012 년 5 월 25 일, 중국은 미국의 상계 관세 대책에 관한 중국의 특정 제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상계 관세 부과로 이어진 예비 판정 및 최종 결정을 포함하여 특정 확인 된 상계 관세 조사의 다양한 측면에 도전하였다. 중국은 또한 미국 상무부가 다수 정부의 소유권으로 기업을 "공공 기관"으로 취급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입증 한 "반박 가능한 추정"에 도전한다. 중국은 도전 과제가 다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12 년 8 월 20 일에 중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2012 년 8 월 31 일 회의에서 DSB는 패널 설치를 연기하였다. 미국은 상계 관세 조사에서 USDOC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 기관"결정이 동일한 조항 또는 USDOC의 특정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패널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항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기구도 또한 중국이 USDOC가 제 2.1 조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불일치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확립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발견을 역전 시켰다. 2016 년 5 월 13 일, 중국은 분쟁에서 DSB의 권고 및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DSU 제 21.5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다. 2016 년 7 월 8 일 중국은 DSU 제 21.5 조에 따라 준수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2016 년 7 월 21 일 회의에서 DSB는 가능한 경우 중국이 제기 한 문제를 원래 패널에게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패널은 중국이 문제의 CVD 조사

에서 철강 및 기타 투입물을 공공 기관으로 취급하는데 있어서 USDOC가 잘못 취급했다는 것을 달리 증명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였다. 패널은 4건의 CVD 조사에서 기록상의 증거가 USDOC의 중국 투입 가격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간주하였다. 패널은 또한 USDOC가 관련 CVD 절차 중에 기록에 남겨진 특정 투입 가격과 관련하여 증거를 무시했다고 지적하였다. 2018 년 4 월 27 일 미국은 준수위원회 보고서에서 다루는 특정 문제와 준수위원회에서 개발 한 특정 법적 해석에 대해 항소심 결정에 DSB에 항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018 년 5 월 2 일 중국은 상호 항소 결정을 DSB에 통보하였다³²⁾.

(1) 시사점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각국에서 빈번히 제기하는 반덤핑 조사로 인해 고생을 겪고 있다. 하지만, 타국에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금과 제품 우위를 이용해 중국 시장에서 덤핑하여 중국 관련 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현상이 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해외 제품에 대해 주도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 규칙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WTO 규칙으로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중국 철강분쟁사례의 전체적인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위에 철강분쟁사례에 대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관련 분석한 제소된 철강분쟁사례는 총 5건이며 <표13>과 같다. 사건

32) 동 사건에 대한 내용은 WTO,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437/참조

의 결과를 보니까 DS544사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건이 다 승소하였다. 보기에 무역 마찰을 발생하면 피하지 말고 선수를 쳐서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인 응소하여 최종의 승소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중국관련 분석한 피소된 철강분쟁사례는 총 4건이며<표14>과 같다. 사건의 결과를 보면 분석한 피소된 철강사례는 승소는 한 사례를 밖에 없다. 중국은 지금 발전 중 국가인데 현재 많은 발전을 모색해 와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아직 시작 단계이다. 경보 시스템을 아직 완비하지 않고 쉽게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중국 기업들 역시 매우 소극적인 대하여 응소하니까 피소하면 중국이 직접적인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중국도 직접은 잇따라 패소한 고소당한 주요원인이다. 전체적 분석으로 보면, 제소된 철강분쟁을 발생한 주요원인은 셰이프가드조치와 중국의 이전에 비시장경제체제 때문에 무역의 불공정한 대우다. 피소된 철강분쟁은 국가 간 가격 차이 때문에 저가판매의 영향 따라서 반덤핑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반덤핑이다.

<표13>중국 제소된 철강분쟁사례 비교분석표

사 건 번호	상대 국	연도	결과	공통점	차이점
DS252	미국	2002	승소	G A T T 1994	셰이프가드조치,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참여한 첫 분쟁사건, 최초로 WTO 관련 조항을 이용해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례
DS397	EU	2009	승소		WTO설립 협정, 비시장경제체제, 중국 WTO 가입 이후 유럽을 기소한 첫 분쟁, 철강 파스너는 반덤핑의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 무역의 불공정한 대우
DS422	미국	2011	승소		"제로잉 ³³⁾ "법 사용

DS437	미국	2012	승소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분쟁
DS544	미국	2018	진행 중		세이프가드조치, 2018년에 중-미간 무역이 직면한 최대 도전은 아마 미국 미역보호주의 정책의 성행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표14> 중국 피소된 철강분쟁사례 비교분석표

사건번호	상대국	연도	결과	공통점	차이점
DS407	EU	2010	승소	GATT 1994, 반덤핑, 수입된 철강제품의 저가판매 영향	중국에서 해외 수입 이음매가 없는 튜브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조사를 제출한 사건, 타국에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금
DS414	미국	2010	패소		보조금,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참여한 첫 "반덤핑, 반보조금" 분쟁 사건, 상대적 완전한 사건, 뚜렷한 대표, 철강"HP-SSST"는 반덤핑의 결정적인 원인은 철강제품의 가격 영향
DS454	일	2012	패		중국에서 해외 수입 이음매가 없

33) "제로잉"이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정책중의 하나로서 수입국가의 내국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負의 마진)는 마이너스로 계산 않고 '0'으로 계산하여 덤핑마진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0으로 계산하는 것을 ZEROING이라고 하면서 덤핑관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사용하는 덤핑계산 방식.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마진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것이다.

	본		소		는 튜브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조사를 제출한 사건, 타국에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금과 제품 우위를 이용해 중국 시장에서 덤핑하여 중국관련 산업 발전을 억제
DS460	EU	2013	패 소		

주: 2018년 8월말 기준.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제3절 철강분쟁은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

1. 전체 영향

철강 분쟁 사건은 중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빈번히 나타나 중국 철강 제품의 무역과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중국 철강 산업의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 철강 분쟁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중국 철강 제품의

생산 과잉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철강 제품 규모 효과 부족을 밝힌 동시에 해외 철강 제품 시장이 쇠퇴한 실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중국 철강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전환을 촉진시키고 중국 제품의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 하고 시장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함으로써 중국 철강 제품의 경쟁 우위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중국 철강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 철강 제품 가격이 너무 낮고 규모 효과가 부족한 상황은 철강 분쟁 사건이 중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구현되는 것을 격화시켰다. 우선 중국 철강 제품 가격이 국제 시장의 철강 가격보다 많이 낮다. 중국 철강 생산량이 비교적 많고 철강 공장이 많으며 기술 수단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생산한 철강 제품 원가가 비교적 낮다. 다음으로 규모 효과로부터 말하면 중국 철강 업계의 시장 집중도가 비교적 낮고 중국 철강 기업 분산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무질서한 시장 경쟁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 철강 기업의 응집력을 크게 낮추어 규모 효과 부족을 야기 시켰다. 수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경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국제 시장에 진출하여 철강 분쟁 사건의 주요 증거로 되어 중국 철강 업계의 장구한 발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 해외 철강 제품 시장의 쇠퇴는 중국 철강 제품과 해외 철강 제품 사이에 거대한 격차에 생기게 하여 반덤핑 사건에 이유와 핑계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미국을 위주로 하는 국가의 무역 보호주의 관념이 비교적 강렬하고 게다가 중국 철강 제품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여 중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철강 분쟁 반덤핑 사건이 자주 나타났다. 이는 중국 철강 산업의 발전과 진보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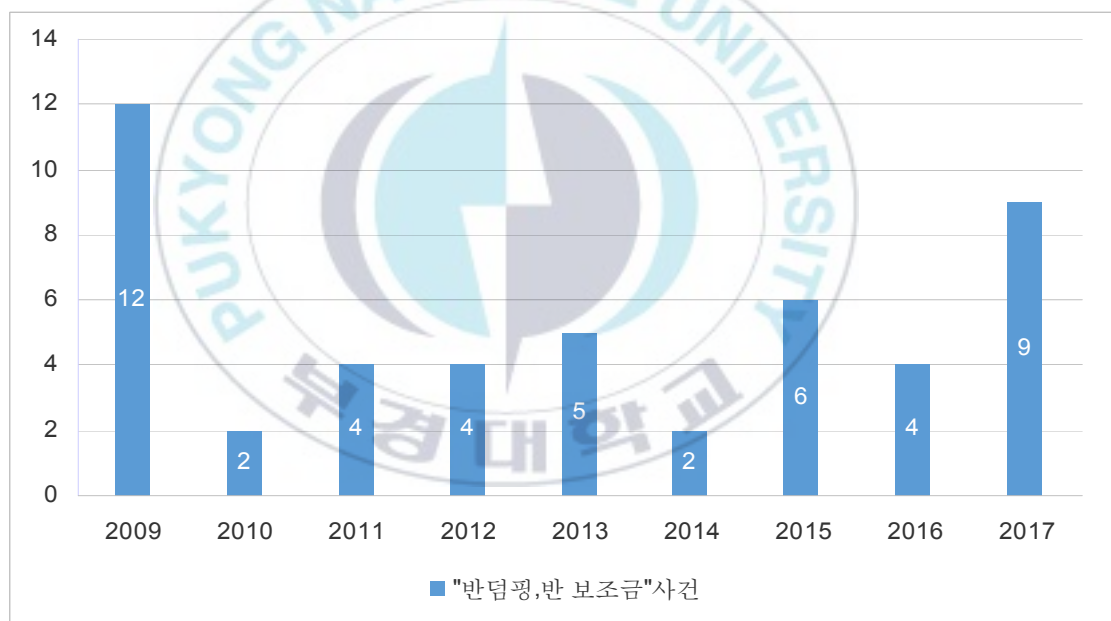
2. 중-미 간 영향

2018년 이래 중·미 무역 충돌이 점차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워싱턴 시간 6월 15일, 500억 달러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해 25%증세한다는 명세서 (그중 340억 달러는 이미 7월 6일에 정식으로 실시) 를 발표한 뒤를 이어 미국 측은 7월 10일에 2000억 달러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해 10%증세한다는 명세서를 또 발표하였다. 미국 측은 더한층 가격을 올려 모든 중국 상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미국의 무역 헤게모니는 전 세계 무역과 경제가 먹구름으로 휩싸이게 하였다. 일부 투자자는, 미국은 중국 대외무역 흑자의 주요 근원이기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경우 중국 대외무역 흑자가 대폭 감소하거나 심지어 적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겼다. 이는 시장이 중국 대외무역 더 나아가 중국 경제를 나쁘게 보는 정서를 자극시켜 가까운 시기 중국 주식 시장과 외국환 시장의 조정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중·미 무역 마찰의 전통 주전장으로서 미국 측이 반덤핑과 반보조금 (즉“이중 반대”) 명의로 별척성 관세 조치를 취한 후 중국 강제 수출의 전반적인 표현으로부터 보았을 때 상술한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중국 대외무역 업계에 대한 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좋다.

세계 무역 기구의 무역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전 세계 금융 쓰나미 이래 미국은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 누계 48건에 달하는“반덤핑·반보조금”조사를 개시 및 관세 처벌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나타났다<그림3>. 예를 들면, 2010년 5월 3일,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서는 중국산 유정관에 대해 최고 99.1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하였고 1월 6일, 상무부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와이어 데킹에 대해 초보적으로 43% 내지 28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6월 4일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와이어 데킹에 대해 최고 437.11%의 반보조금 별척성 세금을 징수한다고 발표하였고 2016년 6월 25일, 국제 무역 위원회에서는 중국, 인도, 이탈리아,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내부 식판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힘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그전 미국 상무부에서 관정을 내린 209.97%의 반덤핑 세율과 39.05%의 반보조금 세율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수입된 내부 식판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였고 2017년 3월 3일, 상무부에서는 미국에 CTL판을 수출하는 중국 제조업체에 대해 68.27%의 반덤핑 관세와 251%의 반보조금 관세를 징수하고 미국에 스테인리스 강판 대강판재를 수출하는 중국 제조업체에 대해 63.86%와 76.64% 2가지 반덤핑 관세 및 75.6%와 190.71% 2가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3> 미국은 중국 철강제품을 수출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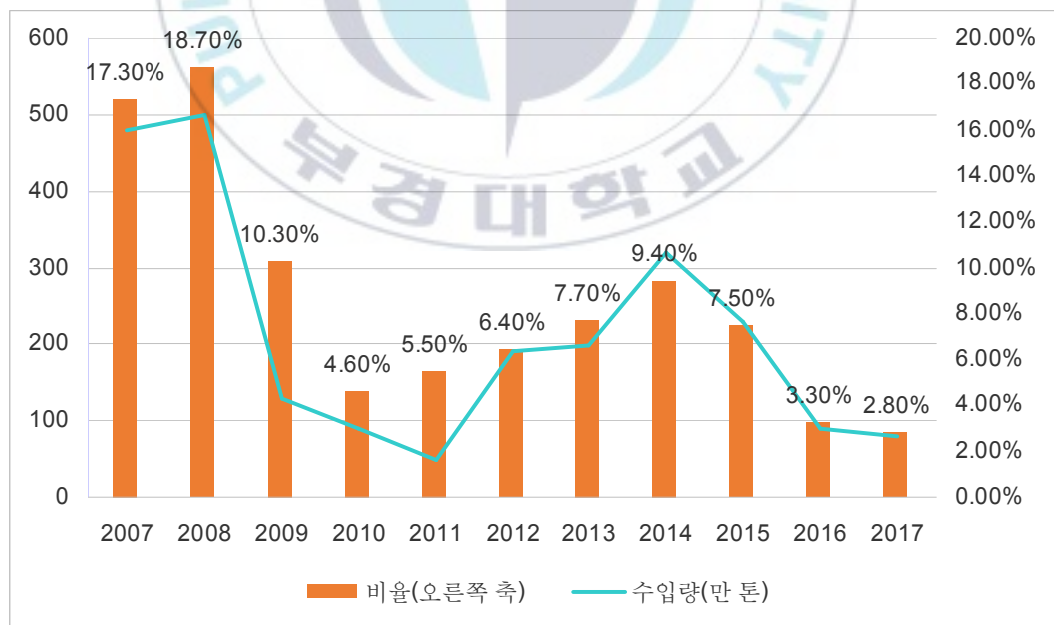
데이터출처 : 세계무역기구 (WTO) (단위 : 건)

또한 미국이 중국 철강 수입에 대해 증세한 후 흔히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도 뒤를 따르게 된다. 세계 무역 기구의 무역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2017년, 20개국(G20) 중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중국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해 159차례의“반덤핑·반보조금”조사를 개시 및 실행하였다고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이 받은 무역구제 조사 사건 가운데서 철강 제품 관련 사건은 49차례,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78.95억 달러로 전국 무역 조사 사건 총수의 41%와 총 금액의 5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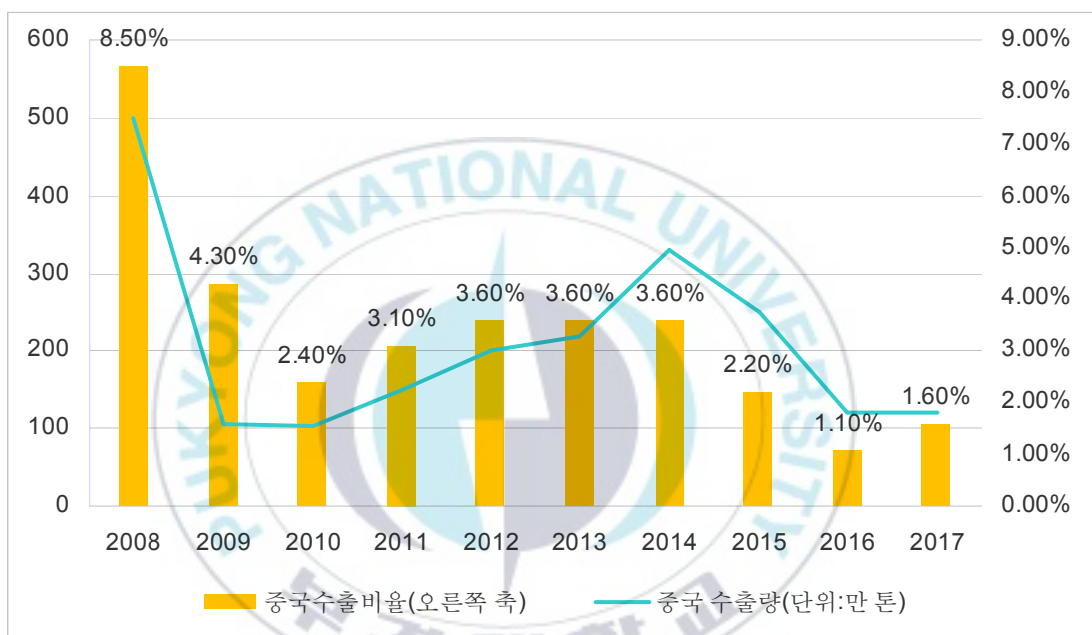
이런 영향을 받아 중국 강재가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락하였다. 미국 철강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 완제품 철강 수입량은 2008년의 483만 톤에서 2017년의 81만 톤으로 하락하여 83% 감소되었고 비례는 18.7%에서 2.8%로 하락하였다 (<그림4> 참고) .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강재 수출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2008년의 503만 톤에서 2017년의 118만 톤으로 하락하여 77%감소되었고 대미 강재 수출량의 비중은 8.5%에서 1.6%로 하락하였다.<그림5>

<그림 4> 미국은 중국 완제품 강 수입량 및 점유율



데이터출처 : 미국철강협회 ; (단위 : % ; 만톤)

<그림 5> 중국은 미국 완제품 강 수입량 및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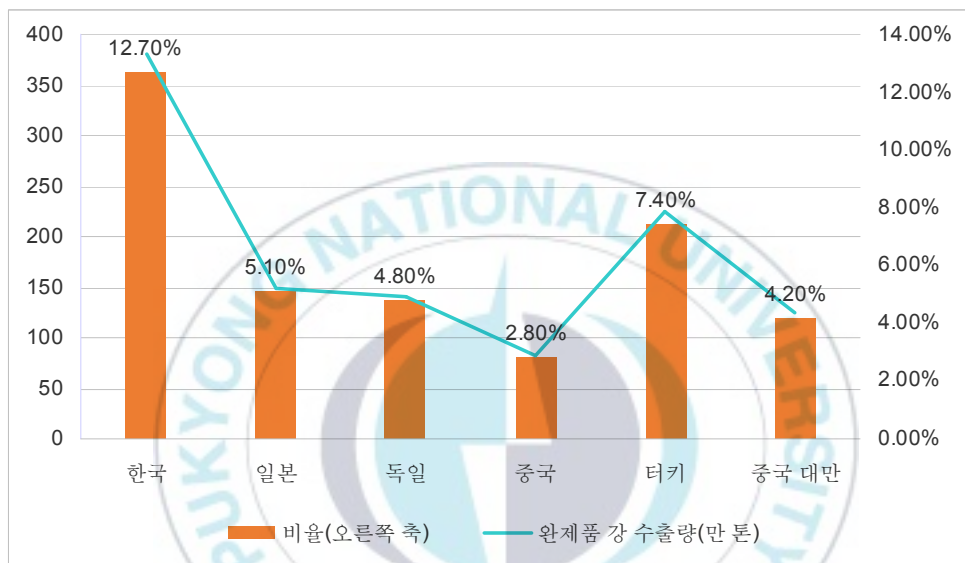
데이터출처 : 중국 관세청 ; (단위 : 만 톤 ; %)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발발 이후 중국 철강 생산능력이 세계 제1위로 부상하였고 철강 수출량도 상위권에 올랐다. 국제 철강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반제품 및 완제품 철강 수출량은 1.12억 톤으로 2008년에 비해 92%증가하였고 전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23.9%에 달해 2008년 대비 11퍼센트 상승하였다. 중국 철강 수출량 및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락한 시기는 2016년 국내에서 철강 과잉생산 해소 조치를 개시한 후부

터이다. 국제 철강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반제품과 완제품 철강 수출량은 1.08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감소하였고 전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8%로 전년 동기 대비 0.1퍼센트 반락하였다. 중국 해관 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강재 수출량은 756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감소하였다.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는 그 철강 산업을 구제하지 못했고 철강 산업의 집적 지는 여전히 미국의 러스트 벨트이다. 2018년 초 미국이 232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할 때 중국에 대한 영향은 적었다. 그것은 과거 각종 특수 제한 조치가 이미 약 94%에 달하는 중국 수입 강재를 커버하여 중국이 미국 강재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3% 미만인 반면 한국, 유럽연합, 일본 등 미국의 전통 맹우가 오히려 주요 타격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철강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완제품 철강 총 수입량은 2956만 톤으로 그 가운데서 한국은 375만 톤으로 12.7%를 차지하고 터키는 219만 톤으로 7.4%를 차지하며, 일본은 150만 톤으로 5.1%를 차지하고 독일은 141만 톤으로 4.8%를 차지하며 중국 대만은 125만 톤으로 4.2%를 차지하였다.<그림6>

<그림6> 2017년 미국 완제품 철강 수출한 주요국가 및 지역



데이터출처 : 국제철강협회 (단위 : 만톤 ; %)

현재 미국은 10% 또는 25% 추가 징수하는 관세 조치로 중·미 무역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는데 그 정도는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에 대해 걸핏하면 백 몇 십 퍼센트 심지어 수백 퍼센트 증세하는 정도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국 상품 수출 세금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해도 그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하지만 무역 전쟁에는 승리자가 없고 건강한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은 중·미 양국과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중국은 자발적으로 모순을 격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격화시킬 생각도 없다. 현재 무역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국내 경제 및 미국 국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날

로 뚜렷해져 미국 국내 반세계화 세력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다. 결국 쌍방은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 무역 분쟁을 협상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중·미 무역 분쟁의 발전 및 중국 대외무역 수출에 대한 영향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준비 부족이든 과잉 대응이든 모두 무리가 있다. 각 측은 동적 평가 및 예측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잘 진행하고 대책을 제정 및 완벽히 함으로써 불리한 것은 피하고 이익이 되는 것은 따르고 사전에 방지하여 우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중국 철강제품 반덤핑의 원인 및 정책 건의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여 중국 철강제품 반덤핑의 원인 및 정책 건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건의는 정부 차원 및 기업차원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1절 중국 철강제품 반덤핑의 원인

위의 사례 분석으로부터 철강이 반덤핑 조사를 받은 것은 철강 분쟁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철강 제품이 왜 반덤핑 중대 재해 지역으로 되었는가? 철강 산업의 기초 산업과 지주 산업의 지위로 인해 각국에서 국민들의 경제 안전을 지키려고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철강업이 무역 마찰의 “중대 재해 지역”으로 되었다. 본 절에서 더욱 상세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총괄 하였다.

1. 전 세계 차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속 증가하는 생산력과 급감하는 수요는 철강 산업의 생산력 과잉 문제를 초래하였고 게다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강제 수요량이 변동된 관건적인 요인은 바로 소비의 하락이다. 수요의 대폭 하락으로 인해 철강 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발전이 힘들고 중국 철강 제품의 가격 우위는 다른 국가 철강 산업의 생존 발전에 더한층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배경 하에서 각국이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2. 국가 차원

(1) 선진국들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철강 산업을 보호한다. 서양 선진국 철강 산업의 하락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날로 하락하는 것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게다가 본래 규모로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미국 1인당 조강표관(粗鋼表觀)소비 총량은 2006년의 448.5kg에서 2014년의 380.7kg로 하락하여 하락폭이 15.1%에 달했고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은 1인당 419.8kg에서 321.2kg로 하락하여 하락폭이 23.5%에 달했다. 서양 선진국에 있어 무역 보호 조치는 보통 그들이 성숙된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이다. 단지 취업 방면으로부터 보았을 때 미국 철강 산업은 약14.2만 명에 달하는 미국 직원을 고용하여 약100만 달러의 취업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국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정부에서 틈틈이 방법을 생각하여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다.

(2) 개발도상국 보호가 아직 성장되지 않은 철강 산업이다. 현재 세계적인 철강 생산력 과잉 및 업계가 전반적으로 쇠퇴한 정세에서 인도에서는 여전히 철강 업계의 발전을 전력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이미 미국을 앞서 세계 제3위의 철강 산업국으로 되었다. 베트남은 본국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외에 2025년에 이르러 철강 수출량을120만~15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 생산력에 도달하려면 앞으로의 10년간 12% 이상의 철강 연평균 성장률이 바로 베트남이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생산율이다. 그러므로 야심만만한 이런 국가들은 강재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본국 철강 산업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3) 중국 내부 원인. 중국 철강 산업은 규모 효과 부족으로 인해 쉽게 충격을 받고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 최근 몇 년간 철강 업계의 “고”이윤은 외국 자본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 자원을 유치하여 철강업에 잇달아 투자하게 하였다. 이러한 형세는 중국 철강 제품 수출 구조 불합리로 인한 충돌을 강화하였다. 게다가 중국 철강 수출 기업의 구조 특징은 “작음, 분산, 많음, 복잡”이고 각 기업 간에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상황이 심각하다. 하지만 형세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 수출 기업은 반덤핑 조사의 응소를 소극적으로 대하여 연쇄 무역 마찰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3. 철강 차원

강재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띠고 있기에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철강 제품은 거의 모두 서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국이 외국 철강 제품을 배척하게 되면 본국 자체의 철강 산업이 비교적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철강업의 하위 산업에 있어 그 원가는 타국 철강 제품 수입의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기에 이런 하위 산업도 철강 산업을 대항하는 원동력이 부족하다.

제2절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정책 개선

한 국가에 있어 기업의 조정은 국내에서만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에 중국 정부는 마땅히 상응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1. 시장 경제의 합리적인 지위가 인정을 받도록 노력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 경제 체제의 구축 및 완비 과정을 가속화 하고 국제 관례와 연결하는 발걸음을 가속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지금은 중국이 완전한 시장 경제 지위를 얻었지만 유럽,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과의 소통을 가일층 강화하여 이런 국가들이 중국 시장 경제 지위를 하루 빨리 승인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전 세계 반덤핑에서의 중국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켜야 한다.

2. 반덤핑 경보 시스템 완비

정부, 업계 협회, 기업 이 3측은 완벽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철강 업계 협회의 설립과 철강 수출 무역 마찰 경보 시스템을 완벽히 하는 것은 무역 마찰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현재, 철강 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선,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을 제정하여 철강 기업 수출 질서를 규범화 하고 우수한 시장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업계 협회는 자체 우위를 이용하여 시장 변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종합적인 분석 연구를 제때에 진행하며 철강 수출 기업에 정확하고 실시간적인 정보 및 법률적 도움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과학적인 경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자율성을 강화하여 저가 경쟁으로 인해 수출 질서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위험 방지 의식을 수립해야 한다. 오직 3측이 함께 협력해야만 완벽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 전용 기금 설립, 전문적인 소송 인재 배양

오늘날, 중국이 반덤핑 소송에 직면하였을 때 대리 기관이 부족하고 반덤핑 소송 인재가 부족으로 인해 과거의 승소 사례에서 대부분 해외 변호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반덤핑 사건에 응소하는 인원은 훌륭한 국제 법률 지식과 전문적인 영어 능력 및 재무 지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 중국 국내에

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변호사가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경제 분석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반덤핑 응소 팀을 결성하여 반덤핑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4. 내수 확대에 진력하여 국내 철강 시장 잠재력 발굴

산업 구조를 합리하게 최적화하는 것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국내 철강 시장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중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의 반덤핑 조사를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전국 GDP증속이 7% 이상으로 유지되고 국가에서 철강의 성장 공간에 필요한 보장성 주택, 수리 공사, 환경 보호 등 방면의 건설을 확대할 경우 전국 조강 생산 수요량은 7.5억 톤 좌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업계의 발전도 국가에서 내수를 확대하여 철강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강력한 버팀목으로 될 것이다.

5. 무역 분쟁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정책을 점차 조정

수출 환급 정책이 점차 중성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직원 복지, 친환경 기준 등 방면에서의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를 강화하며 모 기업 혹은 모 구체적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감소하고 수익 능력, 연구개발 투입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 및 금융 지원 신메커니즘을 점차 완벽히 하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에서 도덕적 주도권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어 중국 국내 공평한 경쟁 시장 환경의 구축을 촉진시키고 관련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인도해야 한다.

제3절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정 방안

반덤핑 조사를 감소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도 일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기업 간 내부 구조 조정

반덤핑 조사를 감소하기 위해 철강 기업 간의 내부 구조를 조절해야 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점은 생산력을 목표가 있게 계획적으로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발전 잠재력이 없는 소기업을 도태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여 철강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철강 오염을 최대한도로 낮춤으로써 중국 철강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2. 기술 업그레이드, 국제 경쟁력 제고

국제 시장에서 중 저급 철강 제품이 반덤핑 조사를 받기 더욱 쉽다. 그러므로 철강 업계의 미래 발전에서 반덤핑을 줄이려면 반드시 중국에서 수출하는 철강 제품 품질과 제품 등급을 제고시켜야 하고 기술 진보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추진시켜야 하며, 가공 공정을 개선하고 대외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고 품질경영을 실시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에서의 중국 철강 제품 지위를 제고시키고 반덤핑 현상을 감소할 수 있다.

3. 기업의 적극적인 응소

무역 마찰에 직면하였을 경우 관련 기업은 제때에 응소하고 적극적으로 항

변하여 손실을 줄여야 한다. 현실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량의 반덤핑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기업이 응소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으로 인한 불리한 영향은 전체 철강 업계에 파급되었다. 현재 중국 국내에도 소송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고 그들은 단독 세율 심지어 영세율의 세율 정책을 얻었다. 이런 양호한 명성과 무형의 이익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법률을 이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결 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중국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에서는 중국 WTO 가입 15년 이후 완전한 시장 경제 대우를 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중국이 2016년 전에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되었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의 15년 내에 기타 성원국은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 대체국 가격으로 덤핑의 존재와 폭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수출 제품 가격을 “비정상 가치”로 간주하여 시장 경제 대체국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반덤핑 기소할 수 있다. 중국 WTO가입 이후 미국에서는 빈번히 비시장경제국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여 중국이 반덤핑 최대 국으로 되게 하였다.

오늘날, 경제 글로벌화의 배경 하에서 각국 간의 무역 왕래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각국 국내 기업은 다투어 해외에 진출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해 본국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GDP 성장을 이끌고 국내 취업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다투어 해외 업무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외 제품으로 인한 충격을 감소하려고 본국 시장을 보호하는데 진력하고 있기에 이로 인한 무역마찰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외 제품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도 여가저가서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외 철강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마찰 실제문제, 원인 및 주요특징을 도출을 하였다. 우선, 중국 관련의 WTO 분쟁현황을 분석하여 WTO홈페이지에 제출한 중국의 철강분쟁에 각 사례분쟁의 기인, 과정, 결과 및 관세청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철강분쟁은 중국의 철

강제품을 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심층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철강제품관련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및 건의를 제시하였다. 정책 건의는 정부 차원 및 기업차원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발생한 일련의 철강 분쟁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큰 단락의 경위와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철강 분쟁 사례를 분석해 중국의 대외 반덤핑 실태 문제 및 응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하게 중국과 3위안에 드는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 미국, 일본과의 주요 철강 분쟁 사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관의 의견으로부터 보았을 때 그들은 중국에서 제출한 절대다수 소송 협상청구를 부정하였다. 이는 중국이 국내 반덤핑 조사 절차에서든 WTO 분쟁 해결 중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서든 모두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중국 국내 기업 간 증거 의식이 약하며, 국내 주무기관을 협력하여 반덤핑 조사 응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 정부 부서의 조사 중점과 응소 기교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글은 상술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제기한 일부 제안을 통해 앞으로의 무역 분쟁 응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고 WTO관련 규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무역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WTO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중시하고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본국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불리한 것은 피하고 유리한 조건은 이용하며 중국 대외무역의 장구한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철강분쟁사례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다른 중국 품목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 다른 중요한 품목별의 각 분쟁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합하여 중국 품목차원에서의 분쟁 특성 및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참고 문헌은 한국문헌, 외국문헌, 기타의 순이다.

1. 한국자료

- 김상만. (2014). 하권: WTO 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관련 미국-중국 WTO 철강분쟁사건 (DS 414) 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 43, 1165-1200.
- 공수진. (2017). 중국-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사건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4(1), 289-319.
- 이상용. (2007).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 (1)(2). *통상법률*, (74), 9-14.
- 김상만. (2012).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소고. *조세와 법*, 5(1), 39-64.
- 김완순. 엄인호. (1996).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 미국 캐나다 한국의 반덤핑조치연구 : 중국의 사례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6(16), 21-23.
- 김도형. (2007). EU 반덤핑법에 관한 소고. *경영과 정보연구*, 21, 77-98.
- 김윤화, & 나희량. (2017). 인도네시아 WTO 무역분쟁 연구: 통상정책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3), 29-55.
- 권영민. (2015). 한중일3국의 WTO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7(2), 1-29.
- 나수엽. (2010). 중·미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 *KIEP 지역경제 포커스*, 10-17.
- 나희량. (2016).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6(4), 119-177.
- 박민규. (2007). 중국 보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73), 73-97.
- 이병우. (2005).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국제경제법연구*, 3, 7-31.
- 이제홍. (2010). 불공정무역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1(4), 107-132.
- 유예리. (2008). 중국의 WTO 분쟁해결체제 활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47, 205-222.
- 조현숙. (2012).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EU 반덤핑관세부과에 관한 WTO 사례연구-유럽연합 반덤핑규칙 제 9 (5) 조 해석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13(1), 101-124.
- 전의천, & 김석민. (2005). 대중국 반덤핑조사 시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의 법원에 관한 분석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9(2), 59-83.
- 전정기. (2015).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무역학회지*, 40(4), 263-286.
- 권영민. (2015). 한국의 WTO 분쟁해결체제 활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40(2), 1-25.
- 최승환. (1994).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 *국제 경제법, 법영사*, 3(2), 345-361.
- 차경자. (2006).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미국과 EU 의 대체국제도 연구-중국의 반덤핑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1), 269-296.
- KIEP. 북경사무소. (2012).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4(4), 1-21.

KOTRA. (2007).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KOTRA Global Business Report*, 07-036.

2. 외국자료

陳玉科. (2018). 中國鋼鐵制品遭受反傾銷現狀及對策. *合作經濟与科技*, (1), 31-33.

俞燕宁. (2012). 貿易救濟案件中的“市場經濟地位”問題——基于中美双反案和中歐緊固件案的研究. *國際貿易問題*, (5), 168-176.

彭德雷, 周圍歡, & 楊國華. (2018). 國際貿易中的“國家安全”審視——基于美國“232 調查”的考察. *國際經貿探索*, 5, 006.

孔志强. (2016). 中國在反傾銷領域的市場經濟地位研究 (Master's thesis, 南京大學).

韓立余. (2001). *WTO 案例及評析, 上卷: 1995-1999*.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陳明聰. (2003). 我國應對因非市場經濟地位問題被反傾銷的對策. *東南學術*, (4), 84-89.

何秀榮. (2005). 對華反傾銷与非市場經濟地位. *農業經濟問題*, (3), 4-8.

彭德雷. (2015). 2016 年后的“非市場經濟地位”——爭論, 探究与預判. *國際貿易問題*, (6), 166-176.

劉軍. (2012). 國際反傾銷与中國鋼鐵對外貿易問題研究 (Doctoral dissertation, 湖南大學).

朱欖叶. (2010). *世界貿易組織國際貿易糾紛案例評析: 2007-2009*. 法律出版社.

徐昕, & 張磊. (2016). 中歐緊固件案執行爭端獲勝 助推中國市場經濟地位認可進程. *WTO 經濟導刊*, (2), 56-57.

- 張舒英. (2001). 透視中日貿易爭端——兼談我國如何應對貿易摩擦. *日本學刊*, (5), 66-83.
- 李曉鄒, & 栗瑤. (2013). “雙反”案件程序問題研究——以 DS414 案件為例. *法制博覽 (中旬刊)*, 2, 003.
- 白玫.(2013). 美國對華暖水蝦反傾銷案研究 (Master's thesis, 西南政法大學).
- 周 灝 . (2 0 1 1) . 中 國 “ 非 市 場 經 濟 地 位 ” 問題及其對反傾銷裁決的影響——基于美國對華反傾銷裁決的實証分析. *國際貿易問題*, (9), 95-105.
- 郭倩. (2016). The Anti-dumping Duties Case Analysis of Japan and EU. *C h i n a C o n c e r n i n g H P - S S S T* 日本歐盟訴中國無縫鋼管反傾銷稅案研究, 2-36.

3. 기타

- WTO. 2002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WT/DS252/
- WTO. 2009. EU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WT/DS397
- WTO. 2011. European Communities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 397/AB/R, 15 July 2011
- WTO. 2010. European Communities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Report of the Panel, WT/DS397/R, 3 December 2010
- WTO. 2010. EU –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on Certain Iron

- and Steel Fasteners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07
- WTO. 2010. United States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14
- WTO. 2011.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WT/DS422/
- WTO. 2012.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437/
- WTO. 2012. 2013.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Japan, EU, WT/DS454/DS460
- WTO. 2018.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

국제철강협회 www.worldsteel.org

미국 상무부 www.commerce.gov

미국철강협회 www.steel.org

세계무역기구(WTO) www.wto.org

세계은행 www.shihang.org

중국해관 www.customs.gov.cn

중국철강공업협회 www.chinaisa.org.cn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중국 관세청 <http://www.chyxx.com/industry/201802/613892.html>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252_e.htm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97_e.htm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14_e.htm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54_e.htm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60_e.htm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4_e.htm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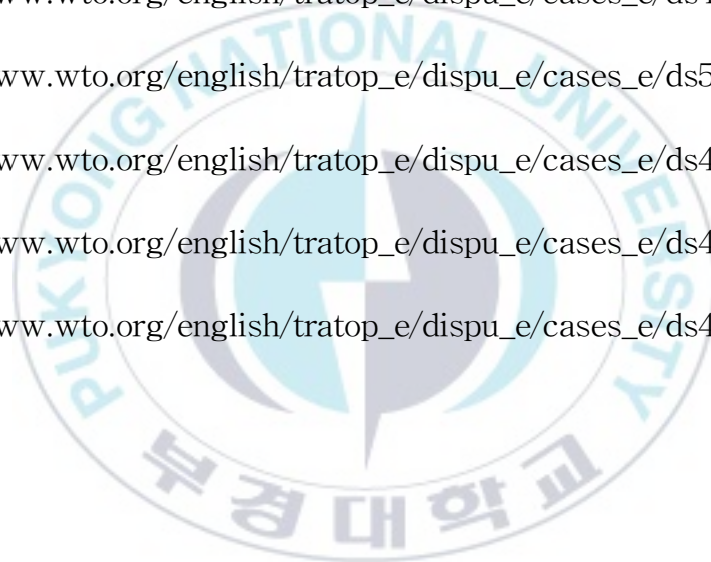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07_e.htm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22_e.htm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37_e.htm



중국의 대외 철강분쟁사태에 관한 연구
-WTO 가입 이후 중심으로

LIU LIMIN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통 상 물 류 학 과

요 약

철강 산업은 국민 경제의 명맥과 관계되며, 그의 모든 행동은 정부와 철강 산업협회의 중점을 둔다.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하였다. 대외무역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날로 격렬해져 중국 대외 무역은 무역 마찰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를 중의 하나로 되었다. 전 세계 무역 분쟁 중 최대 피해국 중의 하나로 되었다. 중국의 철강 제품은 무역 구제 조사를 당하는 핵심품목이어서 더 많은 관심과 반성이 뒤따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사건 수량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해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해 개시한 반덤핑 조치는 24개국과 지역에 관련되었다.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백억 유엔 이상에 달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외 철강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마찰 실제문제, 원인 및 주요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중국과 3위 안에 드는 주요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 미국, 일본과의 주요 철강 분쟁 사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 관련 WTO 분쟁현황을 분석하여 WTO홈페이지에 제출한 중국의 철강분쟁

에 각 사례분쟁의 원인, 관련배경, 과정, 결과 및 관세청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철강분쟁은 중국의 철강제품을 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심층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철강제품관련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및 건의를 제시할 것이다. 정책 건의는 정부 차원 및 기업차원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